

본 중간보고서는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9년도 연구용역에 의한 연구결과임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2020. 01.

연구수행 와이엘컨설팅(주)
연구주관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제 출 문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귀하

귀 기관에서 의뢰한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와이엘컨설팅 주식회사

목 차

책을 펴내며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국내·외 생활임금 논의 및 생활임금 운영 모델	7
제1절 국내외 생활임금 논의와 특징	7
제2절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모델	9
제3절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실태	16
제4절 국내외 생활임금 운영의 변화 방향과 특징	22
제3장 부천시 일자리 특성	29
제1절 부천시 노동시장 특성	29
제2절 부천시 근로자 임금 현황 및 특성	47
제3절 부천시 저임금 노동자 실태	54

제4장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검토 및 제안	61
제1절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61
제2절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	66
제3절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안)	76
제5장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방안	86
제1절 생활임금 민간확산 논의	86
제2절 생활임금 운영 내실화	91
제3절 생활임금 적용확대 방향	94
제4절 생활임금 적용 확대방식	99
[부록] 지자체별 생활임금 적운영 및 적용실태	107

표 목차

<표 1-1> 부천시 훈련수요 도출과정 및 방법	4
<표 2-1> 국내 광역 지자체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정의	9
<표 2-2>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도입 현황(2017.7)	10
<표 2-3> 생활임금 산정 방식 - 상대적 방식과 절대적 방식	11
<표 2-4> 생활임금 산정방식과 추정방식 및 자료 구성	11
<표 2-5> 국내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액 및 적용방식 비교	12
<표 2-6>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산식	14
<표 2-7>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모델	14
<표 2-8>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5
<표 2-9> 2019년 지자체별 생활임금 지급 수준 비교	16
<표 2-10>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현황 및 적용대상 범위(상세)	17
<표 2-11>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액 및 적용방식 비교	20
<표 2-12> 지자체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및 산입 범주	20
<표 2-13> 주요 나라별 생활임금 제도화 및 유형 비교	23
<표 2-14> 지자체별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 노력	25
<표 3-1>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30
<표 3-2>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31
<표 3-3>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32
<표 3-4> 경기도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33
<표 3-5> 규모별 사업체 수(고용보험 DB)	35
<표 3-6> 업종별 종사자 수(고용보험 DB)	36

<표 3-7> 부천시 인구 및 고용 변화	37
<표 3-8> 부천시 산업별 취업자 현황	38
<표 3-9> 경기도와 부천시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비교	39
<표 3-10> 경기도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39
<표 3-11> 경기도와 부천시 고용률 추이 비교	40
<표 3-12> 경기도 시·군별 고용률 비교	40
<표 3-13> 경기도와 부천시 실업률 추이 비교	41
<표 3-14> 부천시 성별 비경제 활동 인구	41
<표 3-15> 부천시 연령별 비경제 활동 인구	42
<표 3-16> 부천시 구인·구직·구인배율 변화추이	43
<표 3-17> 부천시 직종별 구인·구직·구인배율 현황(2018)	44
<표 3-18> 성별 연령별 구직현황(2018)	46
<표 3-19> 지역별 인적 특성별 월 평균임금(2018)	47
<표 3-20> 지역별 인적 특성별 평균 시급(2018)	48
<표 3-21> 지역별 산업별 별 평균 시급(2018)	49
<표 3-22> 지역별 산업별 별 월 평균임금(2018)	51
<표 3-23> 지역별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54
<표 3-24> 지역별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55
<표 3-25> 지역별 교육 정도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56
<표 3-26> 지역별 산업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56
<표 3-27> 지역별 직종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59
<표 4-1> 부천시 생활임금 준비 과정	62
<표 4-2>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연도별 사례	63
<표 4-3> 생활임금 시행 절차	63
<표 4-4> 생활임금 위원회 구성	64
<표 4-5> 생활임금 결정현황	65
<표 4-6> 임금구간 별 생활임금 인상액 적용	65
<표 4-7> 2018년 인적특성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현황	66

<표 4-8> 2019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현황	68
<표 4-9> 2019 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 현황	69
<표 4-10> 2019~2020 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소요예산	70
<표 4-11> 부천시 각 부서 별 생활임금 관련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종합	71
<표 4-12>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설계 방향	77
<표 4-13>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방식 생활임금 모델(단위 : 원) 79	
<표 4-14> 노동자 임금 방식 생활임금 모델(단위 : 원)	80
<표 4-15> 가계소득 기준 생활임금 모델(단위 : 원)	81
<표 4-16> 3인 가족 기준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1(단위 : 원)	83
<표 4-17> 3인 가족 기준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2(단위 : 원)	84
<표 4-18> 생활임금 금액 적용 산입 기준 검토 프로세스 안	85
<표 5-1> 지자체별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 노력	87
<표 5-2> 주요국의 상대 빈곤선	91
<표 5-4>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설계 방향	94
<표 5-5> 모델 4유형 적용에 따른 2020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안)	95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 생활임금 도입 초기 5년간 적용대상과 범위	4
[그림 5-1] 생활임금 금액 적용 산입 기준 검토 프로세스 안	71

요 약

□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생활임금제도 ‘전국의 보편적 기준’ 과 ‘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한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특히 생활임금 적용 방식 (산입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생활임금 수준의 판단 기준을 모색하고자 함.
- 또 생활임금은 ‘고용안정’ (정규직화)정책이 아닌, ‘저임금 해소’ (빈곤선)정책으로, 국내·외 생활임금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및 쟁점을 토대로 주요 생활임금 시행에 있어 부천시 운영모델 및 민간확산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결정 기준 및 방식, 산입항목, 적용대상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생활임금에 선도적 모델을 연구하고 확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생활임금 운영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생활임금에 대한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및 쟁점을 분석하고, 현 부천시의 생활임금 실태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부천시 운영모델 및 민간확산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부천시의 현행 생활임금 산정방법 정리와 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국내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부천시 생활임금의 기준 및 산정방식 등 부천형 모델을 제안하였음.
 - 둘째, 부천시 현행의 생활임금 적용 실태 및 향후 대상자 확대 시 적용 대상자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 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적용을 모색하였음.

- 셋째, 생활임금의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의 확산 적용방안을 검토 하였음. 특히 생활임금 취지가 저임금 해소(빈곤)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부천시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은 민간위탁, 강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순수 민간기업 등 적용방안과 부천시의 행정적 지원 사업 등을 통한 확산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1> 부천시 훈련수요 도출과정 및 방법

연구절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p>Step 1. 현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현황 자료 ▷ 국내·외 생활임금 현황(타 지자체 운영방법 사례 연구) ▷ 현황자료 분석: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임금실태 -시청 및 각 구청 임금조사표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임금 수준과 소요예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생활임금 운영모델 및 경향 분석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현황 파악
<p>Step 2 부천시 사업체 및 노동자 임금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고용보험 자료 바탕으로 부천시 산업 현황 및 직종 별(KECO 등) 고용자 수 및 고용 추이 분석 ▷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한 부천시 임금현황 및 특성 분석 ▷ 부천시 빈곤층 및 노동복지 사각지대 등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 근로자의 연령대, 성비, 소득 수준 등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노동시장 현황(임금, 고용현황) 및 빈곤층 특성분석 - 확대 적용자 예비 분석
<p>Step 3. 적용 대상자 실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부천시청 자료 협조) - 인구학적 특성/노동조건(근속, 근로계약, 노동시간), 임금(수준, 구성, 각종 계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연구절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대상자 및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실태 파악 - 이해관계 자별 생활임금 에 대한 의견과 지향 파악



Step 4. 생활 임금 운영모델(안)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검토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방식/노동자 임금방식/가계소득기준 최 저생계비 +실제지출 - 생활임금 운영 모델(결정기준, 산정방법, 적용 범 위, 적용 시기, 생활임금 산정의 산정범위, 생활임 금 수준)설계 ▷ 부천시 생활임금 소요예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 모델(안) 제시 - 운영모델 별 필요 소요예산 제시
-----------------------------------	---	---



Step 5. 민간 적용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민간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확산 논의와 조건 - 적용확산 영역과 대상 - 생활임금 적용 확대방식 ▷ 적용대상지/부문 별 우선순위 ▷ 확대 실행에 따른 장애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확대방안 모색 - 중간보고 서작성
--------------------------	---	--

□ 부천시 생활임금의 주요 문제점 및 이슈

- 부천시의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전 년 생활임금 수준에 산업항목(임금

인상률/지방세수입전망/생활물가지수/조정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2019년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존 부천시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적용하였다기 보다는 2019년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활임금의 수준을 기 결정하고 역산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현행 생활임금 수준이 부천시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천시 특성을 반영한 논리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생활임금제의 적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 생활임금 수준 10,030원으로 결정으로 생활임금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의 120.1%로 생활임금 적용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에 따라 부천시 예산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2019년 경기도 평균 제정 자립도 68.4% 대비 부천시 제정 자립도는 41.0%로 낮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가 많아지고 생활임금액이 급격히 올라간다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음. 적용에 있어 현행 대상자와 확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전략적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자가 현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국가사무 적용대상자로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제로 적용되는 공공근로 및 직접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는 제외)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직무, 경력,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의 합리적 차이가 아닌 인건비 예산의 성격에 따라 생활임금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어 임금이 불공정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합리적 조건으로 재조정하여 생활임금으로 인한 불공정성 등을 합리적 차이로 인식 전환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그럼에도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을 매개로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적용대상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지속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의 직접고용 뿐 만 아니라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보조금감세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취지가 저임금 해소(빈곤)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 방안이 무엇보다 고민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천시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산은 민간위탁,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순수 민간기업 등 적용방안과 부천시의 행정적 지원사업 등을 통한 확산 적용방안 모색을 통해 확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부천시 노동시장 특성 및 저임금근로자

<표 2>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개소, %, %p)

구 분	2008				2016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개소	비중	인원	비중	개소	비중	인원	비중
계	52,340	100.0%	235,839	100.0%	59,833	100.0%	285,643	100.0%
1 - 4명	42,898	82.0%	77,344	32.8%	47,248	79.0%	85,160	29.8%
5 - 9명	5,423	10.4%	34,492	14.6%	7,833	13.1%	50,342	17.6%
10 - 19명	2,420	4.6%	31,861	13.5%	2,823	4.7%	37,392	13.1%
20 - 49명	1,110	2.1%	32,777	13.9%	1,357	2.3%	40,358	14.1%
50 - 99명	341	0.7%	23,630	10.0%	402	0.7%	27,420	9.6%
100 - 299명	120	0.2%	18,135	7.7%	143	0.2%	21,553	7.5%
300 - 499명	17	0.0%	6,218	2.6%	11	0.0%	4,058	1.4%
500 - 999명	5	0.0%	3,888	1.6%	8	0.0%	5,525	1.9%
1000명 이상	6	0.0%	7,494	3.2%	8	0.0%	13,835	4.8%
평균 규모	45 명				48 명			

- 기업의 규모별 산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 약 99.1%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며, 84.2%가 근로자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었음.(?)

- 전체산업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총 170개소로 0.3%)로 조사 되었으며 1개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의 규모는 4.8명으로 5인 미만 이었음.

출처: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각 년도)

- 통계청 및 워크넷 DB를 활용하여 부천시의 산업 및 고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보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등 다소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0.5% 높은 수준임.



※ 출처: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지역별 비교, 2018년 상반기)

- 기존 선행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의 저임금 정의 방식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전체 임금노동자의 중위 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중위임금의 1/2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초저임금 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함.

-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별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통해 어느 그룹의 어떤 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의 비율이 높은지 파악하고, 향후 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표 3> 지역별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구 분		저임금근로자			총 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성별		총계	성별		총계	성별		총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880	2,067	2,947	10,336	8,165	18,501	8.5%	25.3%	15.9%
	인천광역시	285	803	1,088	2,686	2,217	4,903	10.6%	36.2%	22.2%
	광주광역시	218	596	814	1,862	1,562	3,424	11.7%	38.2%	23.8%
	수원시	45	179	224	833	628	1,461	5.4%	28.5%	15.3%
	부천시	35	189	224	524	548	1,072	6.7%	34.5%	20.9%
	평택시	42	142	184	816	437	1,253	5.1%	32.5%	14.7%
6개 도시 평균		1,505	3,976	5,481	17,057	13,557	30,614	8.8%	29.3%	17.9%

-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11,507원(월급: 220만원),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의 2/3값은 7,671원임(월급: 147만원).
- 저임금 노동자 정의에 의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고 있는 6개 도시 노동자 평균으로는 17.9%인 1,505명이며, 부천시는 20.9%인 7,224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도시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부천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 본 결과 남성 6.7%, 여성 34.5%로 남성보다 여성이 7배가량 높았음.

- 연령별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60대 이상이 55.2%로 가장 큰 비중이며, 이는 6개 도시 평균(47.2%)수준보다 약 5%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25.8%로 타 도시 평균(24.0%)보다 1.8% 높은 수준이었음.

<표 4> 지역별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6개시 평균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21.7%	6.1%	9.3%	17.4%	44.7%	15.9%
		인천광역시	27.7%	10.0%	14.4%	21.9%	51.1%	22.2%
		광주광역시	33.1%	11.9%	16.5%	22.6%	55.6%	23.8%
		수원시	26.1%	4.5%	10.8%	15.6%	39.0%	15.3%
		부천시	25.8%	11.9%	12.3%	22.9%	55.2%	20.9%
		평택시	22.3%	5.6%	11.1%	12.9%	41.7%	14.7%
	총계	24.0%	7.3%	11.3%	18.8%	47.2%	17.9%	

- 교육정도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초등학교를 미 졸업한 근로자가 80.0%로 다수가 차지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저 임금 근로자 비중은 낮게 조사되었음. 그러나 박사졸업한 근로자의 경우 석사 졸업자의 비중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부천시의 경우 타 도시보다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다소 높게 조사됨.

<표 5> 지역별 교육 정도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저임금근로자_월급			교육정도								6개시 평균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_석사	대학원_박사	
저임금 근로자 비중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81.0%	60.7%	45.2%	23.6%	13.5%	8.4%	6.9%	11.1%	15.9%
		인천광역시	83.3%	67.3%	41.0%	23.2%	16.1%	12.2%	7.7%	6.5%	22.2%
		광주광역시	77.3%	67.8%	50.0%	26.0%	17.8%	16.3%	12.1%	4.0%	23.8%
		수원시	83.3%	52.9%	37.0%	17.2%	18.0%	10.6%	5.1%	5.0%	15.3%
		부천시	80.0%	60.7%	38.8%	22.8%	17.5%	12.9%	7.9%	0.0%	20.9%
		평택시	100.0%	39.1%	36.7%	13.5%	14.5%	7.3%	9.8%	20.0%	14.7%
	총계	81.5%	61.9%	43.7%	22.8%	14.9%	9.8%	7.3%	9.4%	17.9%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및 적용대상자 확대(안)

-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 큰 상황에서 향후 법정 최저 임금이 일정한 금액(1만원)에 도달할 경우 지자체 생활임금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제시될 개연성이 있음.
- 2019년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19년 생활임금 결정기준을 '18년 생활임금 수준에 산업항목(임금인상률 + 지방세수입전망+생활물가지수+조정분)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 + % 방식으로 생활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형태임. 이에 부천시 현재의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결정 방식에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따라서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 모델의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요 변화되는 방식으로는 생활임금은 기존 운영 모델을 유지 개선하는 방식(상대적 방식 / 평균임금 비례 기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운영 모델 방식(절대적 방식 + 상대적 방식)을 고안할 수 있음.
- 생활임금 운영 모델을 절대적 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가계지출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상대적 방식을 이용한 임금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봄.
- 가구의 소비지출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반으로 물가수준을 더하여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실제지출을 계산하여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보다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자 임금을 토대로 생활임금을 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의 50% 혹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 다음은 기존의 타 지자체 또는 연구원(서울시, 광주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모델을 토대로, 부천시의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자료 또는 부천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임금의 결정기준과 적용 대상자 별로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각 안 들 중에 아래와 같이 유형 4 방식의 시로부터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 안을 최적으로 도출하였음.

<표 21>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설계 방향

임금 금액 결정 기준 \ 대상	1)시 소속 근로자	2)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소속근로자	4) 3)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5) 위주화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6)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유형 1. 최저생계비 방식						
유형 2. 노동자 임금 방식 - 월평균 급여기준						
유형 3. 가계소득 기준						
유형 4. 최저생계비+실제지출						

- 부천시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방향은 ‘현실적 상황’ 과 ‘정책방향 모색’ 이라는 차원에서 2가지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 이 사이 중범위 수준에서 ‘지원사업’ 을 통한 민간 확산도 검토되고 있음.
- 제한적이지만 생활임금 확산은 기업 인증 및 MOU 등과 병행하여 행정조직 별 다양한 사업 지원제도(주관 행사와 축제, 영화제 등)에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는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런던 사례 등을 통해 연구, 추진되었던 것과 일치함. 그러나 이때 공공계약 과정에서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에 관련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강조함.¹⁾
- 이는 대규모 민간부문 사용자에게 확대시킬 때 중요하며, 중소기업 사용자에게까지 확대시킬 때에는 세제 혜택 등의 보조 수단을 모색 할 수 있음.

1) Lawton and Pennycook(2013)는 생활임금제에 관한 6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둘째,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셋째, 생활임금 시행의 주요한 이득은 재정에서 발생한다. 넷째, 생활임금제를 순전히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만들면 실패함. 다섯째, 생활임금은 근로연계형 복지(in-work benefit)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여섯째, 생활임금 캠페인은 단지 임금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음.

<표 7> 부천시 지역 생활임금 적용 확산의 단계별 검토 방안

단계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적용 대상	고용형태	예시	적용 대상	고용형태	예시
1차	단순 노무도급	파견 용역	단순노무 인력 비정규직	일회적 행사 지원 사업	기간제 시간제	축제/대회/ 영화제
2차	민간위탁	무기계약 비정규직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 센터	제3섹터 강소 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 기업 강소 기업
3차	일자리 보조 공공근로 보조금 사업	기간제 시간제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준공공적 사업장	비정규직	법률, 연구기관 대학/병원 /은행
4차	교육청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학교 공공기관 지사/지점	민간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지역 언론사 향토 기업 대표 기업

- 2020년 사업의 지속운영 예정인 인원은 전체 2,242명으로 이중 생활 임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 970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안하며 전체 970명의 근로자를 생활임금 근로자 전체 적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약 364,595,975천원이 필요함.

<표 8> 모델 4유형 적용에 따른 2020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안)

구분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확대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총 합 계	합 계	1,222	54.5%	1,122,323,452	970	43.3%	364,595,975	2,242	100.0%	1,493,064,577
	상시고용	623	27.8%	964,946,842	226	10.1%	251,850,931	,849	37.9%	1,216,797,774
	일시고용	599	26.7%	157,376,610	794	35.4%	118,890,193	1,393	62.1%	276,266,803
부 천	합 계	717	32.0%	647,718,323	848	37.8%	143,311,465	1565	69.8%	791,029,789

구 부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확대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시	상시고용	289	12.9%	583,800,253	98 (2차 적용 확대 대상자)	4.4%	93,039,145	387	17.3%	676,839,399
	일시고용	428	19.1%	63,918,070	750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33.5%	50,272,320	1178	52.5%	114,190,390
공 기 업	합 계	260	11.6%	218,984,260	21	0.9%	27,550,356	281	12.5%	246,534,616
	상시고용	159	7.1%	152,290,790	21 (3차 적용 확대 대상자)	0.9%	27,550,356	180	8.0%	179,841,146
	일시고용	101	4.5%	66,693,470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0.0%		101	4.5%	66,693,470
출 자 출 연 기 관	합 계	34	1.5%	27,202,365	7	0.3%	6,657,510	41	1.8%	33,859,875
	상시고용	22	1.0%	19,472,335	7 (4차 적용 확대 대상자)	0.3%	6,657,510	29	1.3%	26,129,845
	일시고용	12	0.5%	7,730,030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0.0%		12	0.5%	7,730,030
민 간 위 탁 기 관	합 계	211	9.4%	228,418,504	144	6.4%	193,221,793	355	15.8%	421,640,297
	상시고용	153	6.8%	209,383,464	100 (4차 적용 확대 대상자)	4.5%	124,603,920	253	11.3%	333,987,384
	일시고용	58	2.6%	19,035,040	44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2.0%	68,617,873	102	4.5%	87,652,913

□ 지자체와 사회정책과 연계 필요성

- 시장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왜곡된 시장 작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에 있어 저임금·빈곤 해소, 노동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표를 연계 시킴으로써 사회정책 수단 확장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의 연계가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 홍보와 인식 확산

- 생활임금의 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자체, 기업, 가족, 지역 사회, 국가 등), 모든 주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 생활임금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 예산 및 인원문제를 고려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체의 경우처럼 단계별 시행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현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지자체 직고용 노동자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일부 순수시비로 임금이 지급되는 민가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로 두고 있으나, 그 외 미적용 영역에 있어 우선적용 및 권고방식 등으로 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 소속에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물론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노동자들까지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공공기관 계약 당사자로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 각종 규제 및 계약 요건 제안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제도 확산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국가·지방 계약법과 지자체 기준의 인건비(산하 기관 총인건비)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19대, 20대 국회의 입법안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생활임금 제도 시행이 명시되어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찰 계약에 생활임금 이상의 수준 보장을 의무화 규정 등을 마련해야만 민간 확산 여지가 높음.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빈곤기준선 검토 등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 검토 필요

- 우리나라는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4년 8월 서울시 노원구, 9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제정되었으며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245개 지자체 중 41.6% 102곳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음.
- 생활임금 산출기준은 절대적 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가계지출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상대적 방식으로는 임금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가구의 가계소비지출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반으로 물가수준을 더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최저 생계비가 아닌 가계동향조사 등의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실제지출을 계산하여 물가수준을 더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보다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자 임금을 토대로

생활임금을 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정액급여 50% 혹은 최저임금 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생활임금 수준 판단기준으로 기존에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만 산정하였으나 향후 민간확산에 용이함을 위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2017년부터 민간에서 많이 적용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기준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이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보편적 기준’ 과 ‘지역의 특수성’ 을 고려한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특히 생활임금 적용 방식(산입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생활임금 수준의 판단, 결정 기준을 모색하고자 함.

□ 생활임금의 내실화 및 적용대상자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생활임금제는 ‘고용안정’ (정규직화)정책이 아닌, ‘저임금 해소’ (빈곤선)정책임. 그러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성별 및 직무 등도 학술적·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를 위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가 지난 2016년 10월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토론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음.
-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논의는 제도 자체의 시행(조례, 행정명령)과 절대 금액, 적용방식에 초점을 두었다면, 점차 생활임금 내실화와 적용범위의 확산(직접 고용/산하기관, 간접고용, 산하기관 자회사, 사무·시설 민간위탁, 공사발주·입찰조달, 그 밖의 지원사업, 순수 민간기업 등)에 논의의 초점이 전환되고 있음.
- 지자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의 내실화 속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적용이 필요함. 특히 생활임금 적용 범위/대상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확대하고, 민간위탁, 기타 지원 사업, 순수민간 영역으로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런 이유로 부천시 생활임금의 정책은 ‘내실화’ (사각지대 해소: 대상 확대, 운영모델 개선) 및 ‘민간부문 확산’ 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대표적으로 영국은 생활임금 법제화는 물론 인증제 등을 통해 민간기업으로의 활성화가 진행된 곳임.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생활임금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및 쟁점을 토대로 주요 생활임금 시행지인 부천시 운영모델 및 민간 확산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방 자치단체 생활임금조례, 산입항목 및 산출기준, 적용대상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생활임금에 선도적인 모델을 연구하고 확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생활임금 운영의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생활임금에 대한 도입과 논의 배경, 진행 과정 및 쟁점을 분석하고, 현 부천시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상대로 실태조사하여 부천시 운영모델 및 민간확산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부천시 및 타 시군구 등 생활임금 산정방법 정리와 산정방식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임. 특히 부천시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그간 생활임금의 산정방법 정리하고,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검토 등 통한 부천형 모델 개발할 것임.
 - 둘째, 부천시 생활임금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제시하는 것에 있음. 부천시 생활임금은 자치구와 부천시의 생활임금 산정방법 및 시행방안을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함. 이를 위해서는 부천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 담당자의 적정 생활임금 수준, 제도 운영상 애로사항 등 제반 생활임금 운영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물론 부천시 지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노조,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반영토록 함.
 - 셋째, 생활임금의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의 확산 적용방안을 검토

하여, 실효성있는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특히 생활임금 취지가 저임금 해소(빈곤)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부천시 생활임금의 민간 부문 확산은 민간위탁, 강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순수 민간기업 등 적용방안과 부천시의 행정적 지원사업 등을 통한 확산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표 1-1> 부천시 훈련수요 도출과정 및 방법

연구절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Step 1. 현황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현황 자료 ▷ 국내·외 생활임금 현황(타 지자체 운영방법 사례 연구) ▷ 현황자료 분석: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임금실태 -시청 및 각 구청 임금조사표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임금 수준과 소요예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타 지자체 및 국외 생활임금 운영모델 및 경향 분석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현황 파악
Step 2. 부천시 사업체 및 노동자 임금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고용보험 자료 바탕으로 부천시 산업 현황 및 직종 별(KECO 등) 고용자 수 및 고용 추이 분석 ▷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한 부천시 임금 현황 및 특성분석 ▷ 부천시 빈곤층 및 노동복지 사각지대 등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층 근로자의 연령대, 성비, 소득 수준 등 특성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노동시장 현황(임금, 고용현황) 및 빈곤층 특성분석 - 확대 적용자 예비 분석
Step 3. 적용 대상자 & 이해관계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부천시청 자료 협조) - 인구학적 특성/노동조건(근속, 근로계약, 노동시간, 임금(수준, 구성, 각종 제수당) ▷ 부천시 생활임금 이해관계자 FGI(or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및 민간위탁 노동자 임금실태 파악 - 이해관계자별 생활임금에 대한

연구절차	연구내용	연구결과
	<p>층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이해당사자(공무원위원회 위원노동자 및 노조 등)을 고려/ 생활임금 의미와 평가, 생활임금 실태 및 운영, 민간확대 방안을 중심 	<p>의견과 지향 파악</p>
<p>Step 4. 생활 임금 운영모델(안)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검토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 방식/노동자 임금방식/가계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실제지출 - 생활임금 운영 모델(결정기준, 산정방법, 적용 범위, 적용 시기, 생활임금 산정의 산정범위, 생활임금 수준)설계 ▷ 부천시 생활임금 소요예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 모델(안) 제시 - 운영모델 별 필요 소요예산 제시
<p>Step 5. 민간 적용확대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임금 민간 확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확산 논의와 조건 - 적용확산 영역과 대상 - 생활임금 적용 확대방식 ▷ 적용대상지/부문 별 우선순위 ▷ 확대 실행에 따른 장애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확대방안 모색 - 중간보고서작성

- 부천시 생활임금 연구는 문헌조사 이외 행정조사(부천시 및 자치구 자료), 저임금 실태 파악을 위한 국가 통계분석, 질적조사(개별면접) 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부천시 관내 사업체 임금 및 공공부문 생활임금 실태 파악을 위한 기존 자료 분석과 타 지자체 사례조사를 세밀하게 하였음.
- 향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해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행정 담당 공무원, 위원회 위원, 노사 관계자 등) 심층 인터뷰를 통해 거시적/미시적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

- 해외 생활임금 논의 배경과 진행 과정 관련 선행연구
- 국내 생활임금 논의사항 관련 분석

□ 사례조사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운영실태 파악(지방자치단체 조례/운영계획 조사)
-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및 확대 방향 분석
- 저임금자 일자리 관련 사업 사례 조사

□ 통계 분석

- 정부기관 통계 자료(원시자료) - 부천시 노동시장 실태 분석
- 부천시 노동자 임금실태 분석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임금실태 -공공부문 임금조사표

□ FGI

-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면접조사 -만족도, 개선사항, 장애요인 등
- 부천시 생활임금 이해당사자 면접조사 -행정 담당 공무원, 위원회 위원, 노조 등

제2장

국내·외 생활임금 논의 및 생활임금 운영모델

제1절 국내외 생활임금 논의와 특징

- 최저임금제는 국가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최저임금 하한선의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의 부문에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임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 이러한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지역 내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운영하던 발티모리안(BUILD)이라는 커뮤니티 연합단체가 공무원노조(ASCME)와 연대하면서 시작되었음 (김종진, 2015). 볼티모어시의 생활임금운동이 조레 시행(1995)으로 제도화되면서 미국에서는 밀워키,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저지시티, 시애틀, 뉴욕시, 포틀랜드 등으로 확산되어, 2000년 현재, 22개 지역에서 시행되었음(Adams and Neumark, 2005). 월마트와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시켰음 (Robert and Stephanie, 1998).

- 1980년대 신자유주의 확산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빈곤계층이 고착화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음.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 등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60년대보다 더 악화되었고 최저임금을 받는 상근 노동자가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 시기에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부상하게 되었음 (William, 2001).
-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생활임금은 개인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보다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임금, 시장 중심적 임금이 아닌 사회에 의해 매개되고 조정되는 임금, 최저 임금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요구하게 되었음(Stephanie, 2005).
- 생활임금 논의는 20세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였음. 생활 영위를 위한 임금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가 보장하는 적정수준 임금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음. 각 지역과 거점의 생활임금 캠페인은 지역공동체와 노조, 전문가 집단과 학생, 비정규 노동자들과 시민이 함께 연대, 운동을 전개하였음(김진희, 2014).
- 영국의 생활임금 논의는 2001년 런던에서 활동한 시민, 종교, 이주, 노동단체 등이 참가한 런던 시티즌(London Citizen)이라는 연합단체가 미국 발티모리안과 자매결연을 하면서 본격화되었음. 2005년부터 런던시는 생활임금을 공식 설정하고 시 산하 기구(Greater London Authority, GLA)에서 발표하고 있음. 2011년부터는 런던 소재 중앙 정부 기구에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김종진, 2015). 시티즌UK와 생활임금파운데이션이 주도한 캠페인의 영향 등으로 2012년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런던시를 비롯한 정부 기관, 학교, 병원, 금융권 등 140여 개 기관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 임금을 적용하고 있음(이정희, 2012).

제2절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모델

□ 도입현황

-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과 함께 생활임금(a living wage)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13년 12월에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2014년 8월), 서울(2015년 2월) 등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혹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 정도로 정의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정의도 대체로 비슷하나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조례 정의(제2 조 1)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표 2-1> 국내 광역 지자체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정의

구분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가능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 가능 + 근로자의 가족부양
광역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인천, 경기, 강원

- 국내에서는 노동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2007~2008년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이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음. 이후 한국노총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후보에게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제안하였고, 또한 2012년 총선 과정에서 민주 통합당과 약속했던 노동복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첫 번째 실행과제로 제기했음.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2012년 핵심과제로 생활임금을 선정하였고, 부천시에서는 2012년 4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시초임.

- 이후 2013년 12월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어 2014년 8월 서울시 노원구와 2014년 9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제정되었음. 2016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245개 지자체 중 41.6%인 102곳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014년 7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어 2014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2015년 1월 서울특별시, 2015년 5월 광주광역시 등 10곳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임.

<표 2-2> 국내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도입 현황(2017.7)

연번	구분	자치단체
	합계	88개
1	서울(24)	본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2	부산(4)	본청*, 중구*, 동래구*, 기장군*
3	대구(-)	-
4	인천(6)	본청,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5	광주(6)	본청,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6	대전(3)	본청, 서구, 유성구
7	울산(-)	-
8	세종(1)	본청
9	경기(30)	본청,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고양, 안산,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과천
10	강원(1)	본청
11	충북(-)	-
12	충남(5)	본청, 천안, 아산, 논산*, 당진
13	전북(5)	본청, 전주, 군산, 익산*, 장수*
14	전남(2)	본청, 목포
15	경북(1)	울진*
16	경남(-)	-
17	제주(-)	-

* 주: 생활임금제도 제도시행 유예 자치단체 14개

*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실 요청 원자료 연구진 분석.

□ 구성항목 및 산입범위

-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상대적 방식’ 과 ‘절대적 방식’ 으로 구분, 혹은 양자의 혼합방식도 가능함. 통상적으로 일정한 기준(빈곤선)을 고려한 상대적 방식과 지출 비용을 고려한 절대적 방식임.

<표 2-3> 생활임금 산정 방식 - 상대적 방식과 절대적 방식

구분	상대적 방식	절대적 방식
기준	임금 또는 소득수준의 중위(median), 평균(mean)의 일정비율이나 빈곤선	생활에 필요한 품목 선정 후 비용 산출(이론) 또는 실제 생활비 자료 활용(실태)
목표	분배 개선, 불평등 완화	임금의 사회적 요구 수준 도출
단점	자의성	자의성(이론) 과소추정 가능성(실태)
예시	중위소득수준 또는 최저생계수준의 150%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최저생계비(이론)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실태)

- 생활임금 산정방식의 기초가 되는 추정 방식과 자료는 현재 정부의 다양한 통계 원자료를 통해 가능함. 절대적 방식은 기본 생활비나 표준생계비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상대적 방식은 사업체(임금, 고용, 지역 통계) 현황을 활용하는 방식. 서울시는 절대적 방식과 상대적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음.

<표 2-4> 생활임금 산정방식과 추정방식 및 자료 구성

구분	추정 방식	자료
절대적 방식	기본생활비용 추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8년
	표준 생계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8년
상대적 방식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50%, 60%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 2018년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중위 60%, 2/3	

구분	추정 방식	자료
	월급여 평균 50%, 60%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8년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평균 50%, 60%	
	시간당 정액급여(고용노동부 방식) 중위 60%, 2/3	
	월급여 평균 50%, 6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년 8월
	시간당 임금 평균 50%, 60%	
	시간당 임금 중위 60%, 2/3	
	월급여 평균 50%, 60%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2018년 하반기
	월급여 평균 50%, 60%, 중위 2/3	
	시간당 임금 평균 50%, 60%	
시간당 임금 중위 50%, 60%, 2/3		

- 생활임금은 적용기준(원칙)과 대상(범위), 금액 등을 볼 때 △부천시 모델, △서울시 모델(3인 가족 모델 등), △서울 성북·노원 모델(총액, 제수당 포함 모델), △광주 광산 모델(기본급), △성남시 모델(최저임금 차액 지역상품권 지급) 등이 있음. 주로 생활임금 적용금액(기본시급, 통상시급, 평균시급 등)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적용범위는 거의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에 한정된 상태이나, 서울시 및 서울 노원, 성북, 광주 광산구 등은 간접고용까지 확대된 상태임.

<표 2-5> 국내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액 및 적용방식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구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광주 광역시
포함 수당	['17~] 통상임금 기준 ['15~16] 기본급 +교통비+식대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총 수당 모두 포함	최저임금 산입수당 준용	기본급 교통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총액
적용 방식	절대적 + 상대적 방식 * 서울 3인 가구 가	상대적 방식 (5 인 이상 사업체 기준 평균임금 50%	상대적 방식 (2019년: 2018 생활임금+임금 인상률+지방세	상대적 방식 *자체 결정 생활임금액 (상대적 :)	상대적 방식 (상용직근로자 연평균 총급여의 50%)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구	경기 부천시	경기 성남시	광주 광역시
	계지출 모델, 서울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반영, 최저임금액 반영	+서울시 생활물가 16%의 절반인 8%를 반영)	수입전망+생활물가지수+조정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50%,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 7.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반영)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시 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 · 출연·출자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 민간위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 및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순수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민간위탁기관(인건비가 시비 100%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임금이 월 200 만원 이하 근로자가 포함된 기관)

<표 2-6>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산식

(a)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b) 빈곤기준선 (c) 주거비 (d) 사교육비	↔	$\frac{(a \times b + c + d \times 1/2)}{365\text{시간} *} = f$ $f + f \times \text{물가수준} = \text{최종생활임금}$
산정기준		2019년
변동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기준(378만원)
	빈곤기준선	58%
동일	주거비	124만원 (43㎡기준)
	사교육비 반영률	서울시 사교육비의 50%

- <표 8>의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은 적용 기준(원칙)과 항목에 따라 운영방식을 유형화하면 아래 <표 2-7>과 같이 크게 4가지 모델로 구분될 수 있음.

<표 2-7>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모델

구분	절대적 방식
유형 1. 최저생계비 방식	평균 가구원 수를 고려한 해당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유형 2. 노동자 임금 방식 - 월평균 급여기준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에 전국 대비 해당지역의 생활물가 수준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임
유형 3. 가계소득 기준	3인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3인 가구 소득 자료에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빈곤기준을 적용한 후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계산
유형 4. 최저생계비+실제지출	최저생계비에 지자체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일부 항목은 지자체의 특성 및 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계산

□ 적용대상

- 각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에 명시된 적용 대상은 시와 구청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 시와 구로부터 위탁 및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공통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다만 협력업체 하수급 노동자 및 외주계약시 고용된 노동자나 기타 단체장이 인정하는 소속 노동자는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2-8>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지역	1)시 소속 근로자	2)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시로부터 그사무를위탁받거나시 에공사·용역 등을제공하는기관및업체소속근로자	4) 3)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5) 외주화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6)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서울시	○	○	○	○		
인천시	○					
광주시	○	○	○	◎		
대전시	○	○				○
세종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	○				

주 : ◎는 직접고용 근로자로 명시한 지역

주 : 서울시는 2017년부터 뉴딜일자리와 민간위탁(시비 100%)까지 생활임금을 확대적용.

군포시	10,000	8,900	12.4%	119.8%	2,090,000	12순위
인천시연수구	10,000	(2019년 첫 시행)		119.8%	2,090,000	13순위
전라남도	10,000	9,370	6.7%	119.8%	2,090,000	14순위
연천군	9,909	8,000	23.9%	118.7%	2,070,981	15순위
인천시부평구	9,800	8,630	13.6%	117.4%	2,048,200	16순위
고양시	9,710	9,080	6.9%	116.3%	2,029,390	17순위
천안시	9,710	8,890	9.2%	116.3%	2,029,390	18순위
충청남도	9,700	8,935	8.6%	116.2%	2,027,300	19순위
제주도	9,700	8,900	9.0%	116.2%	2,027,300	20순위
인천시서구	9,610	9,400	2.2%	115.1%	2,008,490	21순위
평택시	9,590	8,650	10.9%	114.9%	2,004,310	22순위
안산시	9,510	9,080	4.7%	113.9%	1,987,590	23순위
인천시미추홀구	9,500	7,800	21.8%	113.8%	1,985,500	24순위
인천시남동구	9,490	9,370	1.3%	113.7%	1,983,410	25순위
광주시	9,420	8,490	11.0%	112.8%	1,968,780	26순위
여주시	9,370	8,450	10.9%	112.2%	1,958,330	27순위
인천시계양구	9,370	8,220	14.0%	112.2%	1,958,330	28순위
김포시	9,360	8,440	10.9%	112.1%	1,956,240	29순위
부산시중구	9,213	(2019년 첫 시행)		110.3%	1,925,517	30순위
전라북도	9,200	8,600	7.0%	110.2%	1,922,800	31순위
부산시사상구	9,020	(2019년 첫 시행)		108.0%	1,885,180	32순위
군산시	9,018	8,130	10.9%	108.0%	1,884,762	33순위
강원도	9,011	8,568	5.2%	107.9%	1,883,299	34순위
가평군	8,983	8,100	10.9%	107.6%	1,877,447	35순위
대전시서구	8,960	7,900	13.4%	107.3%	1,872,640	36순위
동두천시	8,890	8,020	10.8%	106.5%	1,858,010	37순위
목포시	8,770	8,310	5.5%	105.0%	1,832,930	38순위

- 주요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의 생활임금 산입 범위는 ‘기본급+교통비+식비’가 거의 대부분이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부천시(부천시 재정현황+물가 반영한 기본 시급), 서울시(3인 가구 가계지출 생계비 조사), 서울 성북구, 노원구(총액임금: 기본급 +제수당)등 형태는 다양함. 더불어 생활임금의 적용 기준 또한 상대적 방식(최저임금 +@), 절대적 방식(생계비 조사 등), 절대적+상대적 방식 준용 등 매우 다양함.

<표 2-10> 각 지역별 조례 생활임금 현황 및 적용대상 범위(상세)

시구분	임금 수준	조례 제정일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1순위	' 15.01.02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또는공사,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에소속된근로자 · 시공공일자리(뉴딜일자리)근로자
광주광역시	2순위	' 15.05.15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부천시	3순위	' 13.12.12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용인시	4순위	' 16.10.12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수원시	5순위	' 15.10.08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화성시	6순위	' 15.06.10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근로자
성남시	7순위	' 15.07.27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광명시	8순위	' 15.09.30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또는공사,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에소속된근로자
과천시	9순위	' 16.09.30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안성시	10순위	' 16.01.08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안양시	11순위	' 16.07.29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군포시	12순위	' 16.04.06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인천시연수구	13순위		
전라남도	14순위	' 15.10.5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연천군	15순위	' 16.07.08	· 소속 근로자
인천시부평구	16순위	' 15.01.05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고양시	17순위	' 16.06.17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천안시	18순위	' 15.10.12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충청남도	19순위	' 15.12.30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제주도	20순위		
인천시서구	21순위	' 15.12.31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구분	임금 수준	조례 제정일	적용범위
			· 위탁 또는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평택시	22순위	' 16.10.19	· 소속 근로자
안산시	23순위	' 15.11.23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인천시미추홀구	24순위		
인천시남동구	25순위	' 12.05.15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또는공사,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에소속된근로자
광주시	26순위	' 16.09.28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 또는 공사, 용역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여주시	27순위	' 16.01.13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인천시계양구	28순위	' 15.03.27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김포시	29순위	' 15.06.10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부산시중구	30순위	' 17.02.03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라북도	31순위	' 16.06.17	· 소속 기간제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부산시사상구	32순위		
군산시	33순위		
강원도	34순위	' 15.11.06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가평군	35순위	' 16.03.16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전시서구	36순위	' 15.09.25	· 소속 근로자
동두천시	37순위	' 16.09.28	· 소속 근로자
목포시	38순위	' 16.06.07	·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위탁또는공사,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에소속된근로자

- 생활임금은 적용기준(원칙)과 대상(범위), 금액 등을 볼 때 △부천시 모델, △서울시 모델(3인 가족 모델 등), △서울 성북·노원구 모델(총액, 제수당 포함), △광주시 광산구 모델(기본급), △성남시 모델(최저임금 차액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이 있음. 주로 생활임금 적용 금액(기본시급, 통상시급, 평균시급 등) 차이가 있는 상황이며, 적용 범위는 거의 대부분 직접고용 기간제에 한정된 상태이나, 서울시 및 서울 노원, 성북, 광주 광산 등은 간접고용까지 확대된 상태임.

<표 2-11>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액 및 적용방식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서울성북구	경기부천시	경기성남시	광주광역시
포함수당	['17] 통상임금 기준	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총 수당 모두 포함	[~ '18] 통상임금 기준 최저임금 산입수당 준용 ['19] 통상임금 기준	기본급 교통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적용방식	절대적 + 상대적 방식 * 서울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반영, 최저임금액 반영	상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상대적 방식 (최저임금의 130%)

주 : 성남 모델은 자체 결정 생활임금액(상대적 :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50%,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 7.1%, 최저임금과의 차액 반영)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역 시장 쿠폰(화폐: 상품권)로 제공하는 방식

<표 2-12> 지자체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및 산입 범주

지자체	금액 결정 기준	산입 임금 항목
종로구	가계지출모델 (서울시와 동일)	기본급, 식대, 교통비
용산구	전국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 서울시 물가상승률 + 최저임금 상승률 50%	기본급, 식대, 교통비
성동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지출액의 55% +최소주거기준감안 주거비(서울연구원자료)+2014년 서울1인당 평균사교육비 55% 반영	기본급, 정기적 수당
동대문구	최저임금의 120% 수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임금총액의 평균치
성북구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평균임금 50% +서울시 생활물가 16%의 절반인 8%를 반영	기본급 + 제 수당(초과수당, 특별급여는 제외)
강북구	(3인 기준 가계지출 50%+주거비, 교육비)*물가상승률	기본급(통상임금) + 모든 수당
도봉구	(3인 기준 가계지출 50%+주거비, 교육비)*물가상승률	기본급에 모든 수당을 산입

지자체	금액 결정 기준	산입 임금 항목
노원구	5인 이상 상시근로자의 연평균 정액급여의 50% 및 서울시 물가지수 16%의 절반 반영	기본급 및 각종 모든 수당 포함(초과근무수당 포함)
은평구	서울시와 동일	기본급, 식대, 교통비, 주휴수당
강동구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에 서울시 물가상승률 반영	기본급, 식대, 교통비
화성시	평균임금 50%(평균임금 * 물가지수)+사교육비*25%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김포시	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50%에 경기도 생활물가지수 50%를 반영	기본급, 식대, 교통비
성남시	도시근로자 평균임금(50%),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 7.1%, 최저임금 상승액 반영	기본급, 교통비, 교육비, 복리후생비
대전 유성구	(근로자 평균임금 × 50%) × {1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기본급 + 모든 수당 포함
대전서구	최저임금 × 110%	기본급
광주 광산구	상용직근로자 연평균 총급여의 50%	
광주북구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에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후 그것의 50%	급여의 모든 항목
광주남구	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8.1%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0%를 반영해서 최저임금액의 111.1% 반영	기본급
전주시	최저생계비 기준, 5인 이상 상용근로자 평균급여, 고용노동부 노임단가기준, 불티모어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본급
서울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빈곤기준선 56% 적용(빈곤선 60% 목표)	기본급, 식대, 교통비
광주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에서 책정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모든 급여 항목
전남	· 최저임금 + (* 전남지역 평균 소비지출 - 최저임금)×50%	미정
강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미정
아산시	아산시 소재 사업체 근로자 평균 시급의 55.34%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범주 포함 제수당

제4절 국내외 생활임금 운영의 변화 방향과 특징

- 미국과 영국 이외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도 생활임금이 논의·도입되었고, 국내에서는 2013년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나 정책으로 생활임금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처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작된 생활임금(livingwage)은 조례와 정책(행정명령)으로 각 나라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지자체 노동정책 중 하나임. 최근에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이 주요 대학 등을 통해 확산되고¹⁾ 있음.
- 미국, 영국, 한국 등 생활임금을 도입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제로 생활임금운동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와 저항의 형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히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 각 나라별로 상황과 맥락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
 - 첫째, 생활임금은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여 공공정책으로 제도화된 성격을 지니며, 제한적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 둘째, 생활임금은 임금수준을 국가(중앙정부 혹은 연방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가구소득이 중앙정부의 빈곤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생활임금제도는 운동의 성공을 위해 제도 시행의 ‘부정성’보다 ‘긍정성’이 강조되었고, 적용대상이 지역 내 공공부문 사업장 종사자들이거나 준공공적 성격(대학, 병원 등)으로 한정되어 다소 제한적임.

1) 유엔(UN)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최저임금이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하는 반면,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

- 넷째, 생활임금제도는 대체로 집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기구(재단, 위원회, 기구, 회의체)들이 지역사회의 공공 거버넌스 형태로 형성 운영됨.

<표 2-13> 주요 나라별 생활임금 제도화 및 유형 비교

	지표	미국	영국	한국
제도 운동 동성 격	제도화	조례 혹은 행정명령 생활임금기구 구성	행정명령 생활임금재단 구성	조례 혹은 행정 명령 생활임금위원회
	적용대상	공공 직접고용(O) 공공계약 및 보조기업(O) 순수 민간기업(X)	공공 직접고용(O) 공공계약 및 보조기업(O) 순수 민간기업(O)	공공 직접고용(O) 공공계약 및 보조기업(△) 순수 민간기업(X)
	운동 주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공공정책→시민사회 & 공공 거버넌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공공정책→시민사회 & 공공 거버넌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결합 →공공정책 주도
생활 임금 설정	임금 수준	지역별 다양 (최저임금과 3달러 차이)	런던과 런던 이외 지역 (최저임금과 2파운드 차이)	지역별 다양 (최저임금과 1-2천원 차이)
	산정 기준	지출 생활비용 고려 가구원 수 고려	지출 생활비용 소득 고려 가구원 수 고려	도시 물가 반영
	가구원 수	다양한 가구	다양한 가구	(실질적) 1인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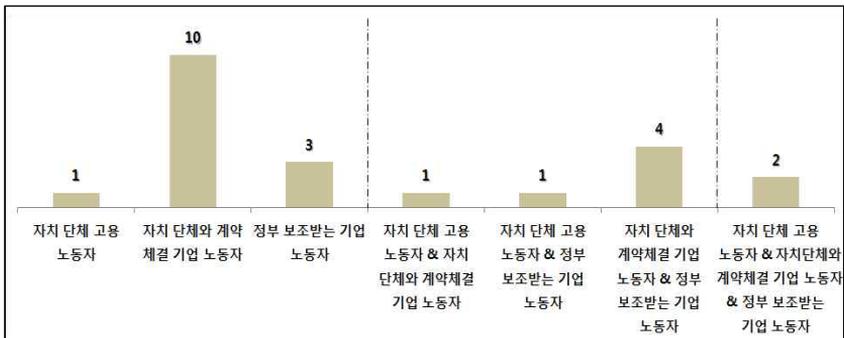
주 : 각 나라별, 지역별 생활임금은 '임금설정 방법'(최저임금 → 빈곤선 → 생활임금)과 생활임금 '측정 구성항목'(식료품, 보육, 의료, 주거, 교통, 기타)을 통해 논의 시점별 정치적 상황과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

- 생활임금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자원' (재정과 임금수준)과 '시장' (공공에서 민간영역으로의 확대)이라는 핵심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부임. 때문에 생활임금 운동단체들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생활임금' 전략을 통해 제도도입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줄이고, 운동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했음.

- 2014년부터 우리나라 지자체 생활임금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정책적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영미식 나라(LMEs)들에서 지방정부가 저임금 해소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 20여 년간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사회운동적 성격으로 제기한 생활임금이 조례와 정책으로 반영된 성과는 과소평가 할 수 없음.
- 생활임금을 도입한 도시들에서는 적용대상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 있음.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생활임금 도입 초기 5년 사이 22개 지역 사례를 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지방정부가 고용한 노동자,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노동자, △정부로부터 세금감면 및 우대나 기업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 노동자 등 세 가지 형태 중 지방정부와 계약한 노동자에게만 적용한 곳이 전체의 절반 가량 차지함.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직간접적인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 지역은 전체의 10분의 1수준인 2곳에 불과했음. 미국이나 영국의 생활임금운동 사례를 보면 대체로 지역 내 대학과 병원 등으로 생활임금운동이 확대되었음.

[그림 2-1] 미국 생활임금 도입 초기 5년간 적용대상과 범위(1995.7~2000.9)

(단위: 수)



주 :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확장성이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의 산호세(San Jose), 오히이오의 톨레도(Toledo)인데, 이들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노동자, 정부로부터 기업 보조를 받고 있는 기업 노동자, 지방정부가 고용한 노동자 모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조례 규정했음. 2001년 이후 미국의 클리블랜드(Cleveland), 로체스터

(Rochester) 등에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넓어진 곳들이 있음. 생활임금 조례 도입 초기(1995~2000년) 해당 지역 바로 인근지역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곳은 9곳이고 도입하지 않은 곳은 13곳임.

자료 : Adams and Neumark(2005: 32) 재구성.

- 현재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 중에서 광역 시도(서울시, 광주시), 기초 시군구(서울 성북, 경기 수원, 경기 부천, 충남 아산, 전주 등) 에서 생활임금 민간 확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해당 지자체는 현재 생활임금의 입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대상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이나 민간위탁, 기타 지원사업, 순수민간 영역으로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있음.
- 문제는 현재 주요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확산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강소기업)와 성북구(2곳 대학)를 제외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설명회, 홍보 수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학계 43%)이 높고, 또한 저임금(부천시 저임금 비율 20.9%) 해소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표 2-14> 지자체별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 노력

지자체	민간 확산 방안
서울 성북구	- 성신여대, 한성대학 양해각서 체결(청소용역 적용) - 구청 민간위탁 어린이집 직용, 관내 주요 기업체 방문 설명회
서울 은평구	- 관내 기업 설명회
서울 동작구	- 관내, 학교와 공공기관 설명회
경기 화성시	- 공공부문 내 민간 사무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 등으로 우선 확대 검토
광주 광산구	- 아파트 경비 등 생활임금 지급 위해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 양해각서 체결
전북 전주시	- 전주시로부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업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자회사(4곳), 민간위탁 시비 100% 적용 - 강소기업(6곳), 사회적 기업 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대 상품 적용

- 특히 민간부문 확대 시 해당 기업의 고용형태(직접고용 기간제 근로 vs. 단시간 및 일용근로 vs. 간접고용 파견용역)까지 적용할 것인지, 모든 직종과 일부 직종(모든 저임금 직종 vs. 일부 특정직종)만 적용할 것인지, 편성과 특수성(법인 전체 사업장 vs. 해당 지역 사업장)에 따라 논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
- 지자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방향은 ‘현실적 상황’ 과 ‘정책방향 모색’ 의 차원에서 2가지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사이 중범위 수준에서 ‘지원사업’ 을 통한 민간 확산도 검토되고 있음.
 - 제한적이지만 생활임금의 확산은 기업인증, MOU와 병행하여 행정 조직 별 다양한 사업 지원제도(주관 행사와 축제, 영화제 등)에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는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런던 사례 등을 통해 연구, 추진되었던 것과 일치함. 그러나 이때 공공계약 과정에서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련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강조함.2)
 - 이는 대규모 민간부문 사용자에게 확대시킬 때 중요하며, 중소기업 사용자에게까지 확대시킬 때에는 세제 혜택 등 보조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자체와 사회정책과 연계 필요성

- 시장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왜곡된 시장 작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달계약과

2) Lawton and Pennycook(2013)는 생활임금제에 관한 6가지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둘째,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셋째, 생활임금 시행의 주요한 이득은 재정에서 발생한다. 넷째, 생활임금제를 순전히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만들면 실패함. 다섯째, 생활임금은 근로연계형 복지(in-work benefit)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여섯째, 생활임금 캠페인은 단지 임금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음.

저임금·빈곤 해소, 노동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인 정책 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정책수단 확장이 가능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 홍보와 인식 확산

- 생활임금의 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자체, 기업,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주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 생활임금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 예산 및 구성인원을 고려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처럼 단계별 적용시행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현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지자체(시·구)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노동자로 두고 있으나, 권고방식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 소속 노동자로 적용하는 것임.
 - 물론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자체 공공조달·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 임대업체 등 노동자들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공공기관 계약 당사자로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 각종 규제 및 제약 요건 제안

- 지자체 생활임금 확산의 제약 요인인 국가·지방 계약법과 지자체 기준 인건비(산하 기관 총인건비)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19대, 20대 국회의 입법안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생활임금제 시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입찰계약에 생활임금 수준 보장을 의무화 규정 마련해야 민간 확산 여지가 높음.

제3장

부천시 일자리 특성

제1절 부천시 노동시장 특성

- 본 절에서는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분석에 앞서 통계청 및 위크넷 DB를 활용하여 부천시의 산업 및 고용특성 등을 분석하였음.
-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산업별 사업체 수, 지역 고용집중 산업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성/연령별 고용 및 실업 현황,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였음.

1. 기업체 현황 및 산업구조

- 산업 중분류별 부천지역에 소재한 기업체 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총 59,833개소로 도매 및 소매업이 2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18%), 숙박 및 음식점업(1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8%)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2008년도 대비 약 7,493개(14.3%)가 더 많아졌으며 업종별 증감률을 살펴 본 결과 제조업이 2,031개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도

1,783개소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표 3-1> 산업 중분류별 사업체 수

(단위:개소, %, %p)

산업별	2008		2016		증감	
	사업체 수	비중	사업체 수	비중	증감	증감율
전산업	52,340	100.0%	59,833	100.0%	7,493	14.3%
농업, 임업 및 어업	-	-	2	-	-	-
광업	3	-	-	-	-	-
제조업	8,749	16.7%	10,780	18.0%	2,031	23.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	0.0%	6	0.0%	2	50.0%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8	0.1%	58	0.1%	20	52.6%
건설업	1,266	2.4%	1,712	2.9%	446	35.2%
도매 및 소매업	11,589	22.1%	13,372	22.3%	1,783	15.4%
운수업	5,506	10.5%	5,847	9.8%	341	6.2%
숙박 및 음식점업	8,508	16.3%	9,541	15.9%	1,033	1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2	0.4%	418	0.7%	186	80.2%
금융 및 보험업	499	1.0%	626	1.0%	127	2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55	5.3%	2,644	4.4%	-111	-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65	1.7%	1,169	2.0%	304	35.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06	0.8%	588	1.0%	182	44.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9	0.2%	82	0.1%	3	3.8%
교육 서비스업	2,508	4.8%	2,537	4.2%	29	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89	2.8%	2,080	3.5%	591	3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54	3.7%	1,898	3.2%	-56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890	11.3%	6,473	10.8%	583	9.9%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출처: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각 년도)

-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종사자 수는 235,839명으로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25.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14.6%), 숙박 및 음식점업(1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8년도 대비 약 49,804명(121.1%)이 더 많아짐. 업종별로 종사자 증감률을 살펴 본 결과 제조업이 7,703명이 늘어 가장 많이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도 6,764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표 3-2>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단위:명, %, %p)

산업별	2008		2016		증감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증감	증감율
전산업	235,839	100.0%	285,643	100.0%	49,804	21.1%
농업, 임업 및 어업	-	-	-	-	-	-
광업	-	-	-	-	-	-
제조업	64,767	27.5%	72,470	25.4%	7,703	11.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7	0.2%	186	0.1%	-171	-47.9%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78	0.5%	1,459	0.5%	381	35.3%
건설업	8,950	3.8%	14,124	4.9%	5,174	57.8%
도매 및 소매업	34,864	14.8%	41,628	14.6%	6,764	19.4%
운수업	10,088	4.3%	11,106	3.9%	1,018	10.1%
숙박 및 음식점업	24,273	10.3%	28,770	10.1%	4,497	18.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29	1.4%	3,957	1.4%	628	18.9%
금융 및 보험업	8,701	3.7%	10,261	3.6%	1,560	1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7,940	3.4%	8,424	2.9%	484	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59	2.0%	6,895	2.4%	2,136	44.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870	3.8%	14,219	5.0%	5,349	6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154	2.2%	4,797	1.7%	-357	-6.9%
교육 서비스업	20,663	8.8%	20,923	7.3%	260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56	5.9%	24,869	8.7%	10,913	78.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17	2.0%	5,460	1.9%	643	1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13,260	5.6%	16,061	5.6%	2,801	21.1%

산업별	2008		2016		증감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증감	증감율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출처: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각 년도)

- 기업 규모별 산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장 중 약 92.1%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며, 전체 산업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총 170개소로 0.3%로 조사되었으며 1개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의 규모는 4.8명으로 5인 미만이었음.

<표 3-3>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개소, %, %p)

구 분	2008				2016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개소	비중	인원	비중	개소	비중	인원	비중
계	52,340	100.0%	235,839	100.0%	59,833	100.0%	285,643	100.0%
1 - 4명	42,898	82.0%	77,344	32.8%	47,248	79.0%	85,160	29.8%
5 - 9명	5,423	10.4%	34,492	14.6%	7,833	13.1%	50,342	17.6%
10 - 19명	2,420	4.6%	31,861	13.5%	2,823	4.7%	37,392	13.1%
20 - 49명	1,110	2.1%	32,777	13.9%	1,357	2.3%	40,358	14.1%
50 - 99명	341	0.7%	23,630	10.0%	402	0.7%	27,420	9.6%
100 - 299명	120	0.2%	18,135	7.7%	143	0.2%	21,553	7.5%
300 - 499명	17	0.0%	6,218	2.6%	11	0.0%	4,058	1.4%
500 - 999명	5	0.0%	3,888	1.6%	8	0.0%	5,525	1.9%
1000명 이상	6	0.0%	7,494	3.2%	8	0.0%	13,835	4.8%
평균 규모	4.5 명				4.8 명			

출처: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각 년도)

-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체 수는 856,163개소로 이 중 7%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종사자 규모는 4,802,623명으로 이 중 5.9%가

부천 지역에 해당 됨. 경기도의 1개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 규모는 5.6명으로 부천시 보다 약 0.8명이 많았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중 부천시는 8번째로 작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됨. 상대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과천시(9.1명), 그 다음으로는 화성시(7.4명), 이천시(6.9명), 성남시(6.8명)시, 안성시(6.5명)의 순으로 나타남.

<표 3-4> 경기도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개소, %, %p)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종사자		평균규모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경 기	856,163	100.0%	4,802,623	100.0%	5.6
과천시	3,740	0.4%	34,018	0.7%	9.1
화성시	54,745	6.4%	405,466	8.4%	7.4
이천시	15,666	1.8%	108,297	2.3%	6.9
성남시	63,969	7.5%	434,064	9.0%	6.8
안성시	13,955	1.6%	90,693	1.9%	6.5
용인시	48,111	5.6%	308,086	6.4%	6.4
파주시	27,220	3.2%	173,306	3.6%	6.4
평택시	34,000	4.0%	207,697	4.3%	6.1
안산시	53,134	6.2%	319,024	6.6%	6.0
수원시	70,004	8.2%	411,761	8.6%	5.9
군포시	17,132	2.0%	100,763	2.1%	5.9
의왕시	8,498	1.0%	48,363	1.0%	5.7
안양시	44,767	5.2%	246,711	5.1%	5.5
김포시	27,252	3.2%	146,813	3.1%	5.4
오산시	11,665	1.4%	61,730	1.3%	5.3
포천시	17,866	2.1%	91,015	1.9%	5.1
광주시	25,603	3.0%	129,669	2.7%	5.1
양주시	16,235	1.9%	82,010	1.7%	5.1
하남시	13,154	1.5%	64,943	1.4%	4.9
시흥시	38,842	4.5%	190,811	4.0%	4.9
여주시	8,348	1.0%	40,404	0.8%	4.8
고양시	63,642	7.4%	305,875	6.4%	4.8
광명시	18,679	2.2%	89,703	1.9%	4.8
부천시	59,833	7.0%	285,643	5.9%	4.8
구리시	13,758	1.6%	62,474	1.3%	4.5
의정부시	25,940	3.0%	114,640	2.4%	4.4
동두천시	6,204	0.7%	27,258	0.6%	4.4
남양주시	36,225	4.2%	154,301	3.2%	4.3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종사자		평균규모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연천군	3,592	0.4%	14,124	0.3%	3.9
가평군	6,316	0.7%	24,347	0.5%	3.9
양평군	8,068	0.9%	28,614	0.6%	3.5

출처: 전국사업체 조사(통계청, 각 년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2018년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를 분석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10인 이하 사업장이 88.7%로 경기도 지역(87.3%)보다 약 1.5%가 많았음.

<표 3-5> 규모별 사업체 수(고용보험 DB)

(단위:개소, %, %p)

시도별		2017	2018. 09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경기도	합계	514,096	551,957	100.0%	37,861	7.4%
	5인미만	372,269	404,245	73.2%	31,976	8.6%
	5인 - 9인	74,323	77,632	14.1%	3,309	4.5%
	10인 - 29인	48,954	51,209	9.3%	2,255	4.6%
	30인 - 49인	8,778	8,902	1.6%	124	1.4%
	50인 - 69인	3,112	3,207	0.6%	95	3.1%
	70인 - 99인	2,440	2,452	0.4%	12	0.5%
	100인 - 149인	1,627	1,682	0.3%	55	3.4%
	150인 - 299인	1,562	1,595	0.3%	33	2.1%
	300인 - 499인	547	547	0.1%	0	0.0%
	500인 - 999인	331	334	0.1%	3	0.9%
1000이상	153	152	0.00%	-1	-0.7%	
부천시	합계	30,644	31,516	100.0%	872	2.8%
	5인미만	22,635	23,482	74.5%	847	3.7%
	5인 - 9인	4,390	4,465	14.2%	75	1.7%
	10인 - 29인	2,779	2,752	8.7%	-27	-1.0%
	30인 - 49인	457	423	1.3%	-34	-7.4%
	50인 - 69인	122	137	0.4%	15	12.3%
	70인 - 99인	113	104	0.3%	-9	-8.0%
	100인 - 149인	65	69	0.2%	4	6.2%
	150인 - 299인	57	56	0.2%	-1	-1.8%
	300인 - 499인	17	13	0.0%	-4	-23.5%

시도별	2017	2018. 09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500인 - 999인	6	13	0.0%	7	116.7%	
1000이상	3	2	0.0%	-1	-33.3%	

출처: 워크넷 DB(한국고용정보원, 각 년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2018년 부천시 관내 업종별 종사자 규모를 파악한 결과 제조업 종사자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종의 종사자가 16.1%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는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종의 경우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앞서 제시된 사업체 조사와는 약간 상이하였음.

<표 3-6> 업종별 종사자 수(고용보험 DB)

(단위:명, %)

구 분	경기도		부천시	
	종사자 규모	구성비	종사자 규모	구성비
합계	2,979,778	100.0%	142,526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5,338	0.2%	11	0.0%
광업	758	0.0%		
제조업	1,134,643	38.1%	48,991	3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788	0.3%	55	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2,752	0.8%	1,919	1.3%
건설업	136,559	4.6%	5,745	4.0%
도매 및 소매업	333,737	11.2%	16,905	11.9%
운수 및 창고업	109,376	3.7%	3,919	2.7%
숙박 및 음식점업	111,040	3.7%	5,948	4.2%
정보통신업	128,601	4.3%	2,755	1.9%
금융 및 보험업	25,680	0.9%	1,294	0.9%
부동산업	80,913	2.7%	4,696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7,393	4.6%	5,938	4.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162,923	5.5%	8,168	5.7%

구 분	경기도		부천시	
	종사자 규모	구성비	종사자 규모	구성비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8,219	1.3%	1,838	1.3%
교육 서비스업	92,327	3.1%	5,738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36,732	11.3%	22,951	1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8,890	1.3%	1,666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3,005	2.1%	3,989	2.8%

출처: 워크넷 DB(한국고용정보원, 각 년도)

2. 고용구조 및 변화

- 부천시의 2017년 주민등록인구는 850,320명으로 2013년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448,900명으로 2013년 대비 3.46%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2.37%가 감소하였음. 취업자는 2018년 상반기 428,800명으로 2013년 대비 3.15%가 증가하였으며, 실업자는 약 20,000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0%나 증가하였음.

<표 3-7> 부천시 인구 및 고용 변화

(단위:천명,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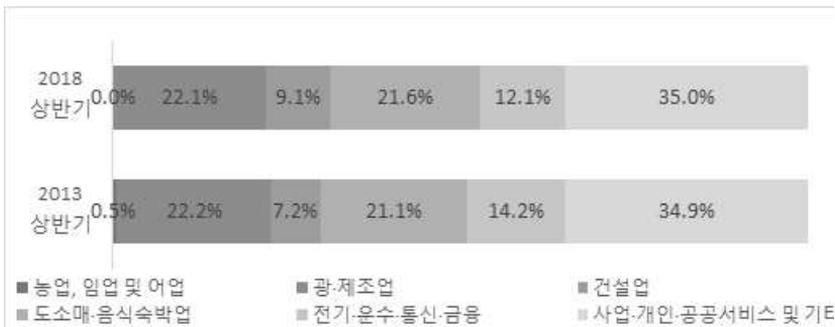
행정구역별	주민등록 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	남자	여자					
2013 1/2	863.7	432.7	431.0	724.9	433.9	415.7	18.2	291.0
2013 2/2				725.1	424.9	407.6	17.3	300.2
2014 1/2	855.6	428.3	427.3	725.4	429.2	411.5	17.7	296.2
2014 2/2				724.2	432.8	413.7	19.1	291.4
2015 1/2	849.0	424.3	424.7	724.4	432.3	414.2	18.1	292.1
2015 2/2				722.7	435.2	416.3	19.0	287.5
2016 1/2	851.4	425.1	426.3	724.3	432.4	411.9	20.5	291.9
2016 2/2				726.2	444.4	423.7	20.7	281.8
2017 1/2	850.3	424.0	426.3	729.0	445.3	425.3	20.0	283.7
2017 2/2				730.6	434.3	418.5	15.8	296.3
2018 1/2	-	-	-	733.0	448.9	428.8	20.0	284.1
증감인원	-13.4	-8.7	-4.7	8.1	15.0	13.1	1.8	-6.9
증감률	-1.6%	-2.0%	-1.1%	1.12%	3.46%	3.15%	9.89%	-2.37%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

- 근로자 주거지 기준으로 부천시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자수는 428천명으로 이 중 35%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광·제조업 종사자가 22.2%로 분석되었음.

<표 3-8> 부천시 산업별 취업자 현황

(단위:천명, %p)



구분	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013 1/2	415.7	0.5%	22.2%	7.2%	21.1%	14.2%	34.9%
2013 2/2	407.6	0.2%	24.4%	6.9%	20.1%	13.6%	34.8%
2014 1/2	411.5	0.4%	23.3%	6.7%	19.9%	14.3%	35.4%
2014 2/2	413.7	0.6%	22.6%	6.3%	20.5%	15.1%	34.9%
2015 1/2	414.2	0.3%	24.0%	7.6%	19.9%	13.6%	34.6%
2015 2/2	416.3	0.2%	22.3%	7.4%	21.2%	13.7%	35.3%
2016 1/2	411.9	0.1%	21.5%	6.2%	21.3%	14.8%	36.1%
2016 2/2	423.7	0.4%	19.9%	6.5%	21.7%	14.5%	37.1%
2017 1/2	425.3	0.4%	21.6%	7.4%	21.8%	14.4%	34.3%
2017 2/2	418.5	0.2%	22.6%	8.4%	22.0%	12.6%	34.3%
2018 1/2	428.8	0.0%	22.1%	9.1%	21.6%	12.1%	35.0%
증감률	3.1%	-0.4%	-0.1%	2.0%	0.5%	-2.1%	0.1%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연도)

- 부천시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 상반기 61.2% 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경기도 평균(64.9%)보다 약 3.7%나 낮은 수치이며, 2013년 상반기 대비하여 보면 경기도는 2.8% 증가된 반면 부천시는 0.3% 증가에 그쳤음.

<표 3-9> 경기도와 부천시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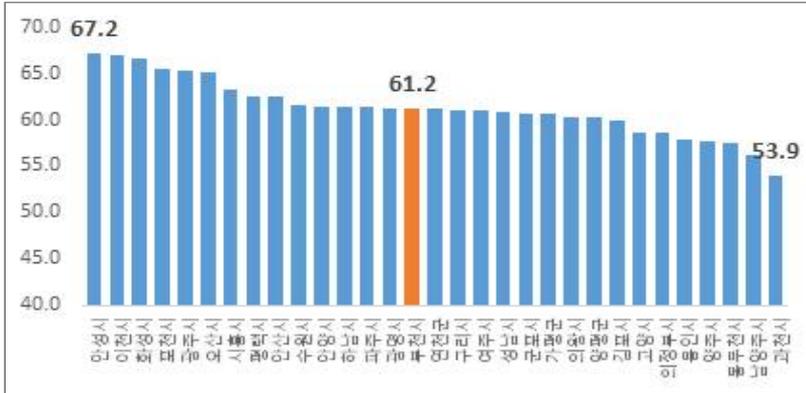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

- 경기도 지역의 31개 시·군중 부천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5번 째로 높았으며, 안성시가 67.2%로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높고, 과천시가 53.9%로 가장 낮았음.

<표 3-10> 경기도 시·군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단위: %)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

- 부천시의 '2018년 상반기 고용률은 58.5%로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평균 고용률(62.3%) 보다 3.8% 낮은 수준이었음. 2013년 상반기 대비 경기도는 부천시의 고용률은 1.2% 증가하였음.

<표 3-11> 경기도와 부천시 고용률 추이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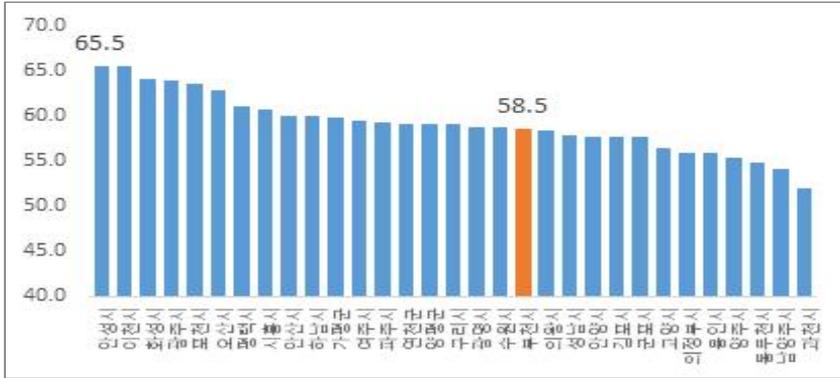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

- 부천시는 경기도 31개 지역 중 19위를 차지하며, 경기도에서 가장 고용률이 높은 안성시(65.5%) 보다 약 7%나 낮아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 고용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2> 경기도 시·군별 고용률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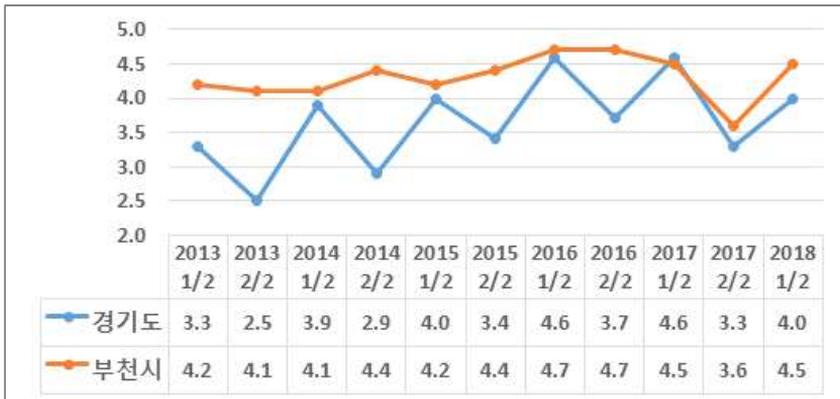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

-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부천시의 실업율은 4.5%로 경기도 보다 약 0.5% 높았으며, 2013년 보다 약 0.7% 증가하였음.

<표 3-13> 경기도와 부천시 실업률 추이 비교

(단위: %)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각 년도)

- 부천시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는 28만 4천명으로 이중 남성이 33.6%, 여성이 66.4%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높았음.

<표 3-14> 부천시 성별 비경제 활동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비경제활동 인구 (천명)	성별			
		남자		여자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3 1/2	291.0	96.2	33.1%	194.7	66.9%
2013 2/2	300.2	99.9	33.3%	200.3	66.7%
2014 1/2	296.2	100.2	33.8%	195.9	66.1%
2014 2/2	291.4	95.5	32.8%	195.9	67.2%
2015 1/2	292.1	96.0	32.9%	196.1	67.1%
2015 2/2	287.5	96.3	33.5%	191.2	66.5%
2016 1/2	291.9	94.2	32.3%	197.7	67.7%
2016 2/2	281.8	93.0	33.0%	188.8	67.0%
2017 1/2	283.7	90.0	31.7%	193.7	68.3%
2017 2/2	296.3	101.5	34.3%	194.9	65.8%
2018 1/2	284.1	95.5	33.6%	188.6	66.4%
증감인원	-6.9	-0.7	-	-6.1	-
증감률	-2.37%	-0.73%	-	-3.13%	-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비율이 51.5%로 과반수 이상이었음.
2013년 대비 비경제 활동인구는 2.37% 감소하였으나 50세 이상의
중고령자의 비중은 23.03% 증가하였음.

<표 3-15> 부천시 연령별 비경제 활동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비경제활동 인구 (천명)	연령별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13 1/2	291.0	103.9	35.7%	68.1	23.4%	119.0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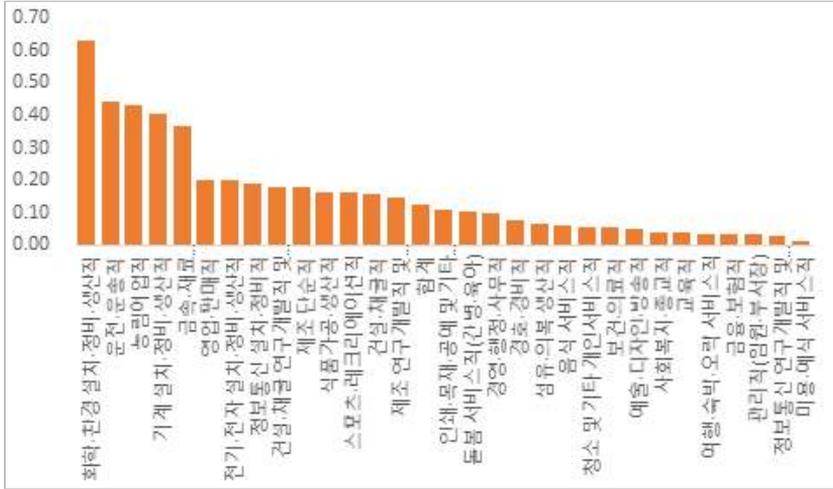
2013 2/2	300.2	106.9	35.6%	73.6	24.5%	119.7	39.9%
2014 1/2	296.2	100.3	33.9%	71.8	24.2%	124.1	41.9%
2014 2/2	291.4	100.3	34.4%	68.7	23.6%	122.4	42.0%
2015 1/2	292.1	98.0	33.6%	63.8	21.8%	130.2	44.6%
2015 2/2	287.5	89.1	31.0%	66.1	23.0%	132.3	46.0%
2016 1/2	291.9	89.0	30.5%	71.6	24.5%	131.4	45.0%
2016 2/2	281.8	87.9	31.2%	65.8	23.3%	128.2	45.5%
2017 1/2	283.7	83.9	29.6%	64.8	22.8%	135.0	47.6%
2017 2/2	296.3	84.3	28.5%	68.5	23.1%	143.6	48.5%
2018 1/2	284.1	78.1	27.5%	59.6	21.0%	146.4	51.5%
증감인원	-6.9	-25.8	-	-8.5	-	27.4	-
증감률	-2.37%	-24.83%	-	-12.48%	-	23.03%	-

3.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 워크넷 DB를 활용하여 부천시의 직종별 구인·구직 통계를 통하여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였음. 워크넷 자료의 신규 구인건수는 부천시 인력수요의 특징을 보여주고, 신규 구직건수의 특성은 부천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속성을 보여줌. 워크넷 자료는 사업장 소재지 및 구직자 거주지 기준으로 각 연도별 월 신규 구직·구인 건수를 연간 평균한 수치이며 직종, 임금 등 분류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 유효구인배율은 신규 구인건수를 신규 구직건수로 나눈 수로 유효구인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유효구인배율이 낮을수록 구직자가 취업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구인배율에 따른 구인·구직난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절대인 기준 수치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전년 대비, 지역별 대비를 통하여 구직·구인난의 심화 또는 완화되고 있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세부 직종별로는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운전·운송직, 농림 어업직,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에서 구인배율 0.37배로 상대적으로 구직난이 적었으며, 미용·예식 서비스직, 정보통신 연구 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관리직(임원·부서장), 금융·보험직,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교육직, 사회복지·종교직 등에서 구인배율이 0.04 이하로 구직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부천시 직종별 구인·구직·구인배율 현황(2018)

(단위: 명, 배)



직종(중분류)	전국			경기도			부천시		
	구인 인원	구직자 수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자 수	구인 배율	구인 인원	구직자 수	구인 배율
합계	198,616	1,131,750	0.18	62,819	268,782	0.23	2,576	20,467	0.13
관리직(임원·부서장)	1,481	39,704	0.04	404	10,093	0.04	22	670	0.03
경영·행정·사무직	27,275	259,403	0.11	7,216	63,510	0.11	449	4,457	0.10
금융·보험직	454	8,291	0.05	56	1,746	0.03	4	133	0.03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41	693	0.06	4	155	0.03		13	0.00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79	2,099	0.09	23	437	0.05	0	22	0.00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691	25,092	0.07	379	7,588	0.05	19	662	0.0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620	15,514	0.30	966	3,486	0.28	37	207	0.18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6,691	40,918	0.16	2,141	9,378	0.23	107	738	0.15
교육직	2,053	24,357	0.08	372	5,950	0.06	13	345	0.04
법률직	173	3,534	0.05	26	910	0.03	0	75	0.00
사회복지·종교직	5,005	50,267	0.10	1,074	12,271	0.09	34	817	0.04
경찰·소방·교도직	11	766	0.01	6	168	0.03		12	0.00
군인	2	215	0.01	2	54	0.03		3	0.00

보건·의료직	6,107	53,532	0.11	1,237	11,140	0.11	41	749	0.05
예술·디자인·방송직	3,169	45,253	0.07	814	13,137	0.06	54	1,066	0.05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562	3,328	0.17	113	872	0.13	8	49	0.16
미용·예식 서비스직	507	19,651	0.03	108	5,019	0.02	6	420	0.0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969	8,768	0.11	98	2,211	0.04	6	175	0.04
음식 서비스직	9,141	69,894	0.13	2,788	15,434	0.18	81	1,308	0.06
경호·경비직	3,041	36,013	0.08	1,003	9,237	0.11	54	685	0.08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6,679	41,603	0.16	2,044	9,410	0.22	108	1,052	0.10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9,270	64,704	0.14	3,048	17,747	0.17	62	1,097	0.06
영업·판매직	9,993	46,733	0.21	2,638	12,363	0.21	187	922	0.20
운전·운송직	12,068	41,354	0.29	5,071	8,505	0.60	247	558	0.44
건설·채굴직	7,392	41,411	0.18	1,793	7,377	0.24	88	562	0.16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7,264	37,807	0.46	5,964	7,125	0.84	300	738	0.41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 단조·주조·용접·도장 등)	10,698	18,010	0.59	3,557	2,517	1.41	94	257	0.37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198	37,693	0.22	2,724	9,555	0.29	207	1,029	0.20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1,013	3,172	0.32	245	743	0.33	12	63	0.19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004	5,568	1.08	2,603	1,172	2.22	100	158	0.63
섬유·의복 생산직	1,850	6,939	0.27	921	1,422	0.65	8	116	0.07
식품가공·생산직	4,584	11,481	0.40	1,462	2,768	0.53	36	222	0.16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4,066	14,413	0.28	2,392	3,412	0.70	26	236	0.11
제조 단순직	21,658	42,124	0.51	8,349	10,300	0.81	141	798	0.18
농림어업직	4,707	11,445	0.41	1,179	1,570	0.75	23	54	0.43

- 부천시 경우 2018년 구인배율이 0.13배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10명당 1.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으로, 이 수치는 구인배율이 0.23배인 경기도 보다 약 0.1배나 낮은 수치이며 전국보다 0.05배가 낮아 타 지역에 비해 부천시 구직난이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추이분석 결과 지난 5년 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17> 부천시 구인·구직·구인배율 변화추이

(단위: 명, 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구인인원	223,575	230,543	251,175	240,253	198,616
	구직인원	1,209,197	1,293,277	1,307,728	1,303,501	1,131,750
	구인배율	0.18	0.18	0.19	0.18	0.18
경기도	구인인원	62,452	65,462	77,842	78,351	62,819
	구직인원	314,627	342,119	332,405	314,332	268,782
	구인배율	0.20	0.19	0.23	0.25	0.23
부천시	구인인원	3,113	2,910	3,532	3,037	2,577
	구직인원	24,053	27,361	25,697	22,426	20,475
	구인배율	0.13	0.11	0.14	0.14	0.13

- 구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구직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 구직현황은 여성이 전체 구직자의 57.1%로 남성(42.9%)보다 약 14.3% 큰 비중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4세 이하가 15.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20세 이상 24세 이하 근로자가 12.7%로 20대 근로자가 27.6%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청년층 구직이 두드러졌다. 또 50대 근로자도 19.2%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중고령자의 구직현황도 높게 조사되었음.

<표 3-18> 성별 연령별 구직현황(2018)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합계	8,772	42.9%	11,695	57.1%	20,467	100.0%
19세이하	309	1.5%	298	1.5%	607	3.0%
20-24세	969	4.7%	1,623	7.9%	2,592	12.7%
25-29세	1,548	7.6%	1,546	7.6%	3,094	15.1%
30-34세	786	3.8%	1,123	5.5%	1,908	9.3%
35-39세	716	3.5%	1,063	5.2%	1,779	8.7%
40-44세	577	2.8%	954	4.7%	1,531	7.5%
45-49세	636	3.1%	1,158	5.7%	1,794	8.8%
50-54세	624	3.0%	1,215	5.9%	1,839	9.0%
55-59세	828	4.0%	1,258	6.1%	2,087	10.2%
60-64세	1,024	5.0%	904	4.4%	1,928	9.4%
65세이상	755	3.7%	553	2.7%	1,308	6.4%

제2절 부천시 근로자 임금 현황 및 특성

- 본 절에서는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분석에 앞서 통계청 및 위크넷 DB를 활용하여 부천시 산업 및 고용특성을 분석하였음.
- 기업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산업별 사업체 수, 지역 고용 집중산업 분석을 통해 부천시 산업특성을 파악하고, 성/연령별 고용 및 실업현황,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천시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였음.

<표 3-19> 지역별 인적 특성별 월 평균임금(2018)

(단위: 만원)

구 분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6개시 평균
성별	남자	344	280	280	348	275	318	323.75
	여자	216	173	174	206	177	181	200.98
연령	20대 이하	194	175	161	189	179	192	187.38
	30대	300	257	244	316	251	283	287.14
	40대	361	273	264	335	256	310	327.31
	50대	319	247	266	322	229	294	294.77
	60대 이상	191	150	159	171	151	173	176.02
학력	안받았음_무학	89	74	75	102	58	45	81.26
	초등학교	125	114	103	149	141	174	123.13
	중학교	155	166	154	170	164	181	159.60
	고등학교	206	206	201	221	200	252	208.71
	전문대	236	230	221	238	216	247	232.76
	대학교	338	293	269	337	268	336	324.03
	대학원 석사	431	360	329	432	380	374	414.77
대학원 박사	512	541	529	505	494	387	513.71	
총계		287	232	232	287	225	270	269.38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018년도 하반기)

-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산업별 사업체 수, 지역 고용 집중산업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성/연령별 고용 및 실업 현황,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였음.

<표 3-20> 지역별 인적 특성별 평균 시급(2018)

(단위: 원)

구 분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6개시 평균
성별	남자	18,446	14,640	14,983	17,856	14,264	16,126	17,201
	여자	12,580	10,269	10,410	12,169	10,544	10,326	11,778
연령	20대 이하	11,201	9,953	9,606	10,919	10,263	10,277	10,795
	30대	16,278	13,614	13,108	16,668	13,642	14,719	15,469
	40대	19,467	14,493	14,248	17,666	13,789	15,721	17,561
	50대	17,515	13,419	14,717	17,080	12,308	15,356	16,085
	60대 이상	11,572	9,366	10,238	10,009	9,191	10,196	10,785
학력	안받았음_무학	7,117	7,361	5,828	6,118	4,844	5,148	6,800
	초등학교	7,677	7,632	7,773	7,807	8,568	8,859	7,773
	중학교	8,512	9,365	8,989	9,068	8,852	9,502	8,854
	고등학교	11,190	10,854	10,733	11,504	10,503	12,801	11,142
	전문대	12,894	12,456	12,034	12,849	11,989	12,908	12,673
	대학교	18,578	16,303	15,070	18,223	15,130	18,041	17,858
	대학원 석사	24,062	19,498	19,151	23,213	20,142	19,951	23,083
	대학원 박사	30,311	29,630	29,310	29,417	33,877	19,570	30,008
총계	15,857	12,663	12,897	15,412	12,362	14,103	14,799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2018년도 하반기)

-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산업별 사업체 수, 지역 고용 집중산업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성/연령별 고용 및 실업 현황,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였음.

<표 3-21> 지역별 산업별 별 평균 시급(2018)

(단위: 만원)

구 분	6개시 평균	광주 광역시	부천시	서울 특별시	수원시	인천 광역시	평택시
음식점 및 주점업	8,281	7,898	8,379	8,478	8,407	7,760	8,131
가구 내 고용활동	7,840	6,534	8,458	8,312	8,237	8,492	5,689
기타 제품 제조업	11,750	13,195	8,493	12,585	14,671	10,085	7,601
기타 개인 서비스업	9,053	8,460	8,500	9,358	8,456	8,394	9,65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589		8,726	11,763		12,08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14,152	10,931	8,876	14,509	15,426	14,248	13,89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0,756	10,824	9,369	10,779	11,384	10,700	10,782
가구 제조업	11,826	9,436	9,627	14,630	6,422	11,307	9,9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320	10,728	9,633	12,367	17,644	12,819	12,177
사업지원 서비스업	10,454	10,100	9,937	10,916	10,257	9,003	9,921
소매업, 자동차 제외	10,860	9,154	9,978	11,816	8,717	9,138	9,849
사회복지 서비스업	9,497	9,353	10,003	9,719	10,349	8,886	9,443
식료품 제조업	12,812	11,954	10,093	14,401	10,919	13,046	11,069
부동산업	12,536	9,841	10,352	13,413	12,116	11,021	10,612
석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2,286	10,307	10,454	12,938		10,049	15,743
숙박업	13,333	10,942	10,477	13,692	7,237	12,127	11,76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3,180	12,848	10,511	13,930	10,997	12,423	10,874
76	14,030	13,075	10,691	15,057	16,557	11,281	16,46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734	9,087	11,015	15,182	17,954	12,14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6,861	16,836	11,019	20,814	15,691	16,965	16,91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3,643	14,453	11,052	15,470	26,088	11,867	14,382
화화합물질 및 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6,013	16,165	11,054	18,748	13,059	12,506	18,13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연료 재생업	14,460	12,631	11,219	13,082	20,137	15,433	18,524
전자장비 제조업	14,941	14,422	11,356	18,109	16,652	13,457	15,171
1차 금속 제조업	18,010	16,329	11,443	18,635		18,561	16,947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7,588	16,757	11,534	20,241	15,680	11,863	12,019
도매 및 상품중개업	15,604	12,358	11,617	16,607	14,631	13,060	13,138
협회 및 단체	14,445	9,725	11,874	16,313	8,703	11,511	8,868
금속기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13,379	11,980	11,978	16,139	12,135	13,127	14,162

가구제외							
총계	14,799	12,897	12,362	15,857	15,412	12,663	14,10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598	6,895	12,380	10,692	6,056	9,8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3,077	11,588	12,604	13,651	13,668	12,128	16,1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314	12,837	12,633	17,952	19,661	14,241	18,700
전문직별 공사업	14,072	12,753	12,705	14,542	12,747	13,990	14,625
총합계	15,703	13,535	13,162	17,289	15,194	13,158	14,57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451	12,082	13,185	16,065	15,321	11,957	11,50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9,671	16,484	13,427	20,614	18,616	14,754	11,3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030	11,484	13,521	14,243	23,014	8,773	14,20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5,212	13,886	13,703	15,876	16,313	13,013	17,022
출판업	18,945	16,019	13,732	19,126	17,824	15,263	16,253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1,120	8,700	14,197	12,114	8,123	8,506	23,014
종합 건설업	16,621	13,106	14,211	18,777	13,617	14,439	15,699
전문서비스업	21,631	14,187	14,374	22,428	18,023	15,585	18,2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4,311	12,480	14,384	17,567	10,740	13,755	20,137
보험 및 연금업	18,568	15,681	14,901	20,071	20,131	14,777	10,853
보건업	15,900	14,227	15,024	16,700	18,668	14,128	14,513
교육 서비스업	16,920	16,154	15,490	17,857	15,416	15,423	14,45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823	13,111	15,670	18,873	23,030	12,018	17,600
84	16,377	15,459	16,394	16,711	18,417	15,429	14,59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19,177	15,032	16,678	20,078	16,327	15,428	18,420
의료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0,431	10,713	16,685	21,698	14,921	18,543	15,039
통신업	18,521	15,925	17,689	19,657	19,654	11,852	23,014
금융업	23,949	21,791	18,170	24,736	22,530	19,530	21,362
34	14,561	15,020	18,411	15,814	15,520	11,81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444	15,133	18,411	20,759	19,574	16,403	18,555
연구개발업	21,292	16,721	19,562	20,591	23,975	21,428	21,34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571	19,973	20,489	26,319	25,645	17,888	23,537
방송업	20,685	38,836	21,575	20,822	11,507	14,264	14,329
항공 운송업	30,299	26,753	21,923	32,510	14,384	27,19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382		24,341	20,068		13,790	
국제 및 외국기관	20,146			21,132			17,188
농업	10,849	10,022				7,364	12,648

담배 제조업	17,676	9,973		25,379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2,822	8,959				16,685	
수도사업	18,697	18,825		19,637	24,164	11,379	
수상 운송업	22,139			23,445		14,121	29,534
어업	12,459					12,4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4,916	12,494		15,307	12,329	10,958	6,473
음료 제조업	21,123	15,322		27,903		10,356	
임업	15,548			20,137		10,959	
정보서비스업	16,885	16,687		17,126	11,507	11,699	16,685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175	17,252		14,305	21,081	10,649	6,7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4,274			32,079		16,469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7,197	11,507		20,137		18,929	15,116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137			20,137			

-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산업별 사업체 수, 지역 고용 집
중산업 분석을 통해 부천시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성/연령
별 고용 및 실업 현황,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천시
의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하였음.

<표 3-22> 지역별 산업별 별 월 평균임금(2018)

(단위: 만원)

구 분	6개시 평균	광주 광역시	부천시	서울 특별시	수원시	인천 광역시	평택시
음식점 및 주점업	152	137	156	157	156	143	138
가구 내 고용활동	107	72	180	118	71	125	115
기타 제품 제조업	215	178	173	231	275	193	140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7	152	175	165	141	135	14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04	0	123	213	0	192	0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269	209	220	274	308	263	29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98	195	158	202	209	192	187
가구 제조업	245	186	205	309	120	232	2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0	205	200	243	333	230	227
사업지원 서비스업	189	182	170	197	199	164	195

소매업, 자동차 제외	198	162	187	215	163	171	183
사회복지 서비스업	140	135	154	148	161	120	145
식품업 제조업	246	224	195	272	245	246	228
부동산업	228	184	183	240	231	209	202
석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29	197	197	232	0	190	332
숙박업	257	209	215	263	205	226	23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61	254	244	269	243	258	220
76	259	226	200	273	340	219	33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4	164	220	260	320	20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5	315	223	400	301	325	34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7	288	205	292	471	239	281
화학물질 및 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1	310	207	337	244	228	32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연료 재생업	279	230	195	257	350	310	344
전자장비 제조업	289	284	212	341	313	263	304
1차 금속 제조업	336	286	195	339	0	351	33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37	325	233	381	318	236	260
도매 및 상품중개업	289	236	203	307	269	244	257
협회 및 단체	233	165	186	261	147	190	1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263	240	227	305	260	261	280
총계	269	232	225	287	287	232	27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6	135	228	208	140	18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57	218	266	267	262	248	31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4	254	248	334	373	278	349
전문직별 공사업	267	235	257	274	259	258	296
총합계	292	248	243	319	282	242	26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63	265	275	303	277	240	2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61	304	247	378	355	268	17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9	199	160	271	400	151	28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85	259	264	293	309	246	345
출판업	353	301	266	355	366	297	306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190	148	221	205	157	159	80
종합 건설업	313	238	260	356	261	268	302
전문서비스업	404	252	257	420	347	281	30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83	247	300	376	280	266	400
보험 및 연금업	339	270	262	371	367	265	223

보건업	293	262	280	307	340	267	252
교육 서비스업	269	262	242	280	253	250	24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6	253	295	357	438	236	362
84	294	272	301	303	343	265	26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351	272	301	367	305	297	346
의료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86	270	290	413	287	342	273
통신업	349	294	349	368	381	243	400
금융업	450	399	321	465	418	370	408
34	283	302	320	296	344	23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83	291	345	390	366	298	323
연구개발업	402	309	340	382	468	396	45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0	349	373	477	462	340	425
방송업	390	675	375	394	200	243	310
항공 운송업	471	465	338	493	250	4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51		475	359		243	
국제 및 외국기관	355			375			293
농업	177	177				80	191
담배 제조업	352	207		49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225	160		0		290	
수도사업	333	413		329	420	220	
수상 운송업	395			426		264	430
어업	293					29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9	156		270	175	172	63
음료 제조업	406	319		514		180	
임업	275	0		350		200	
정보서비스업	306	291		312	200	203	2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11	266		218	152	163	10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56			582		33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05	200		350		329	28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75			575			

제3절 부천시 저임금노동자 실태

- 기존 선행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의 저임금 정의 방식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전체 임금노동자의 중위 임금 2/3미만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 중위임금의 1/2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초저임금 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함.
 -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별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통해 어느 그룹의 어떤 자리에서 저임금 근로의 비율이 높은지 파악하고, 향후 임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2018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위임금은 11,507원(월급: 220만원),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이 되는 중위임금의 2/3값은 7,671원임(월급: 147만원).
 - OECD의 저임금 노동자 정의에 의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는 6개 도시 평균은 17.9%인 1,505명이며, 부천시는 20.9%인 7,224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도시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 부천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성별로 살펴 본 결과, 남성 6.7%, 여성 34.5%로 남성보다 여성이 7배가량 높았음.

<표 3-23> 지역별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구 분		저임금근로자			총 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성별		총계	성별		총계	성별		총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880	2,067	2,947	10,336	8,165	18,501	8.5%	25.3%	15.9%
	인천광역시	285	803	1,088	2,686	2,217	4,903	10.6%	36.2%	22.2%
	광주광역시	218	596	814	1,862	1,562	3,424	11.7%	38.2%	23.8%
	수원시	45	179	224	833	628	1,461	5.4%	28.5%	15.3%
	부천시	35	189	224	524	548	1,072	6.7%	34.5%	20.9%
	평택시	42	142	184	816	437	1,253	5.1%	32.5%	14.7%
6개 도시 평균		1,505	3,976	5,481	17,057	13,557	30,614	8.8%	29.3%	17.9%

-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부천시 경우 60대 이상 55.2%로 가장 큰 비중이며, 이는 6개 도시 평균(47.2%)수준 보다 약 5%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25.8%로 타 도시 평균(24.0%)보다 1.8% 높은 수준이었음.

<표 3-24> 지역별 연령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구 분			연령대					6개시 평균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저임금 근로자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771	305	437	594	840	2947
		인천광역시	207	106	184	251	340	1088
		광주광역시	180	95	158	167	214	814
		수원시	65	18	41	47	53	224
		부천시	51	28	37	55	53	224
		평택시	41	16	43	36	48	184
	총계		1,315	568	900	1,150	1,548	5,481
총 계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3,560	4,970	4,679	3,411	1,881	18,501
		인천광역시	748	1,061	1,281	1,148	665	4,903
		광주광역시	543	797	959	740	385	3,424
		수원시	249	396	378	302	136	1,461
		부천시	198	236	302	240	96	1,072
		평택시	184	288	388	278	115	1,253
	총계		5,482	7,748	7,987	6,119	3,278	30,614
저임금 근로자 비중	사업체 소재지	서울특별시	21.7%	6.1%	9.3%	17.4%	44.7%	15.9%
		인천광역시	27.7%	10.0%	14.4%	21.9%	51.1%	22.2%
		광주광역시	33.1%	11.9%	16.5%	22.6%	55.6%	23.8%
		수원시	26.1%	4.5%	10.8%	15.6%	39.0%	15.3%
		부천시	25.8%	11.9%	12.3%	22.9%	55.2%	20.9%
		평택시	22.3%	5.6%	11.1%	12.9%	41.7%	14.7%
	총계		24.0%	7.3%	11.3%	18.8%	47.2%	17.9%

- 교육정도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 부천시의 경우 초등학교를 미 졸업한 근로자가 80.0%로 다수가 차지하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낮게 조사되었음. 그러나 박사졸업한 근로자의 경우 석사 졸업자의 비중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부천시의 경우 타 도시보다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다소 높게 조사됨.

<표 3-25> 지역별 교육 정도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저임금근로자_월급		교육정도								6개시 평균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_석사	대학원 _박사		
저임금 근로자	사	서울특별시	51	286	374	1053	342	712	94	35	2947
	업	인천광역시	30	136	150	477	123	158	12	2	1088
	체	광주광역시	17	101	98	279	93	207	17	2	814
	소	수원시	5	18	20	81	32	61	5	2	224
	채	부천시	4	17	33	94	34	39	3	0	224
	지	평택시	3	18	33	74	26	25	4	1	184
		총계	110	576	708	2058	650	1202	135	42	5481
총 계	사	서울특별시	63	471	828	4463	2530	8461	1370	315	18501
	업	인천광역시	36	202	366	2057	763	1292	156	31	4903
	체	광주광역시	22	149	196	1074	523	1269	141	50	3424
	소	수원시	6	34	54	472	178	578	99	40	1461
	채	부천시	5	28	85	413	194	302	38	7	1072
	지	평택시	3	46	90	548	179	341	41	5	1253
		총계	135	930	1,619	9027	4367	12243	1845	448	30614
저임금 근로자 비중	사	서울특별시	81.0%	60.7%	45.2%	23.6%	13.5%	8.4%	6.9%	11.1%	15.9%
	업	인천광역시	83.3%	67.3%	41.0%	23.2%	16.1%	12.2%	7.7%	6.5%	22.2%
	체	광주광역시	77.3%	67.8%	50.0%	26.0%	17.8%	16.3%	12.1%	4.0%	23.8%
	소	수원시	83.3%	52.9%	37.0%	17.2%	18.0%	10.6%	5.1%	5.0%	15.3%
	채	부천시	80.0%	60.7%	38.8%	22.8%	17.5%	12.9%	7.9%	0.0%	20.9%
	지	평택시	100.0%	39.1%	36.7%	13.5%	14.5%	7.3%	9.8%	20.0%	14.7%
		총계	81.5%	61.9%	43.7%	22.8%	14.9%	9.8%	7.3%	9.4%	17.9%

<표 3-26> 지역별 산업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구 분	사업체소제지						총계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석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의	20.4%	41.7%	11.1%		50.0%	10.0%	2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6%	42.9%			50.0%		24.6%

숙박업	9.7%	15.8%	28.6%	0.0%	50.0%	0.0%	11.2%
사회복지 서비스업	46.8%	55.8%	50.5%	33.3%	49.0%	47.4%	49.0%
음식점 및 주점업	41.1%	47.1%	54.5%	36.9%	43.8%	52.6%	43.8%
협회 및 단체	20.7%	34.9%	34.9%	45.5%	36.4%	42.9%	25.9%
사업지원 서비스업	29.4%	38.5%	37.6%	29.7%	33.8%	30.0%	31.7%
도매 및 상품중개업	6.3%	14.3%	14.8%	5.6%	33.3%	8.0%	8.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5%	51.1%	40.5%	52.6%	30.8%	33.3%	41.9%
기타 제품 제조업	18.8%	30.8%	25.0%	0.0%	30.0%	50.0%	22.7%
소매업, 자동차 제외	24.5%	37.2%	42.5%	33.3%	28.4%	35.7%	29.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7%	21.4%	6.9%	0.0%	25.0%	3.4%	13.5%
1차 금속 제조업	0.0%	1.8%	0.0%		25.0%	12.5%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0%	4.2%	5.0%	0.0%	25.0%	0.0%	3.1%
통신업	3.0%	9.5%	7.4%	0.0%	25.0%	0.0%	4.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	7.0%	6.0%	0.0%	22.2%	4.2%	6.1%
부동산업	24.1%	25.9%	30.9%	17.9%	22.2%	36.4%	24.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3.8%	8.2%	11.5%	9.1%	20.0%	3.4%	9.0%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27.0%	36.5%	34.6%	27.8%	20.0%	47.1%	30.5%
전자장비 제조업	5.1%	18.3%	7.3%	0.0%	18.2%	3.1%	9.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7%	11.1%	24.1%	0.0%	18.2%	50.0%	6.5%
보건업	6.7%	10.5%	14.1%	9.2%	17.8%	6.9%	9.1%
교육 서비스업	19.6%	22.0%	21.9%	21.7%	17.6%	27.4%	20.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4%	42.9%	25.0%	0.0%	16.7%	0.0%	11.0%
식품 제조업	13.2%	12.3%	31.3%	0.0%	15.4%	3.8%	14.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4.7%	9.5%	9.1%	11.6%	15.4%	14.8%	12.8%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2.5%	5.8%	11.9%	12.5%	15.4%	0.0%	1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9.2%	4.3%	7.7%	0.0%	14.3%	0.0%	7.6%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31.8%	41.3%	48.3%	57.1%	12.5%	100.0%	35.6%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7%	11.4%	5.9%	0.0%	10.0%	0.0%	7.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5%	17.4%	12.7%	1.5%	9.8%	2.1%	8.5%
금융업	1.3%	4.3%	9.8%	4.3%	9.1%	0.0%	2.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4.3%	16.4%	10.0%	8.3%	2.2%	5.7%
전문직별 공사업	7.1%	8.2%	9.4%	4.2%	6.8%	2.5%	7.0%
보험 및 연금업	4.7%	12.9%	9.0%	0.0%	5.6%	25.0%	6.3%
전문서비스업	2.6%	9.6%	14.3%	5.3%	5.3%	0.0%	3.3%
84	16.8%	24.7%	28.3%	9.4%	4.2%	16.7%	19.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5.1%	41.7%	40.0%	50.0%	0.0%		26.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0.0%	0.0%	33.3%	0.0%	0.0%	0.0%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40.9%	42.9%	0.0%	0.0%	0.0%	20.0%
화학물질 및 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9%	14.9%	0.0%	20.0%	0.0%	0.0%	6.3%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	5.9%	0.0%	0.0%	0.0%	25.0%	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7%	0.0%	0.0%	0.0%	0.0%	0.0%	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33.3%			0.0%		6.7%
가구 제조업	5.0%	6.5%	14.3%	100.0%	0.0%	0.0%	7.4%
34	8.7%	0.0%	0.0%	0.0%	0.0%		4.4%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연료 재생업	9.5%	4.5%	27.3%	0.0%	0.0%	0.0%	9.4%
종합 건설업	7.0%	6.3%	16.0%	9.6%	0.0%	2.2%	7.8%
항공 운송업	0.0%	0.0%	0.0%	0.0%	0.0%		0.0%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6.5%	9.3%	17.6%	0.0%	0.0%	5.7%	7.8%
출판업	3.0%	6.7%	0.0%	0.0%	0.0%	0.0%	2.9%
방송업	6.9%	0.0%	0.0%	0.0%	0.0%	0.0%	6.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0.0%	0.0%	0.0%	0.0%	0.0%	1.4%
연구개발업	8.8%	13.6%	0.0%	6.5%	0.0%	0.0%	8.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2.1%	4.0%	11.4%	6.7%	0.0%	0.0%	3.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7%	8.3%	44.4%	0.0%	0.0%		13.1%
76	11.1%	25.0%	14.3%	0.0%	0.0%	0.0%	12.9%
가구 내 고용활동	66.7%	61.5%	100.0%	100.0%	0.0%	100.0%	75.0%
농업		100.0%	27.3%			57.1%	42.1%
임업	0.0%	0.0%					0.0%
어업		25.0%					25.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	50.0%				25.0%
음료 제조업	0.0%	0.0%	0.0%				0.0%
담배 제조업	0.0%		33.3%				16.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	0.0%					0.0%
수도사업	5.9%	0.0%	0.0%	0.0%			4.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0%	0.0%	0.0%			0.0%	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0%						0.0%
수상 운송업	0.0%	0.0%				0.0%	0.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7.2%	75.0%	40.0%	50.0%		100.0%	21.3%
정보서비스업	3.3%	0.0%	0.0%	0.0%		0.0%	2.9%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	57.1%	20.0%	40.0%		100.0%	33.1%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표 3-27> 지역별 직종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_월 평균임금(2018)

(단위: 명, %)

구 분	사업체소재지						총계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15.0%	33.3%	7.1%		100.0%	0.0%	14.0%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48.5%	66.1%	70.5%	85.7%	70.0%	75.0%	58.8%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58.1%	62.1%	73.7%	47.5%	59.5%	57.4%	60.5%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52.7%	65.5%	57.8%	46.2%	52.8%	76.5%	56.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5.5%	43.0%	48.0%	40.0%	52.3%	46.8%	39.6%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7.2%	38.5%	44.4%	50.0%	50.0%	50.0%	29.3%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63.2%	66.3%	74.0%	50.0%	40.9%	50.0%	63.5%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68.2%	47.6%	41.2%	40.0%	40.0%	20.6%	48.6%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30.2%	18.1%	26.0%	11.8%	31.3%	11.8%	25.0%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8.5%	15.2%	21.2%	34.5%	26.3%	12.5%	19.5%
급속 및 비급속 관련 기계 조작직	8.3%	1.6%	8.3%	25.0%	23.5%	0.0%	6.7%
	14.8%	20.9%	22.1%	13.9%	19.8%	13.4%	16.7%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0.8%	10.2%	14.1%	11.2%	19.0%	16.7%	11.7%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6.6%	16.7%	22.3%	22.9%	18.3%	23.8%	18.1%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6.1%	5.9%	3.8%	7.7%	18.2%	5.1%	6.1%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10.1%	12.2%	27.3%	0.0%	18.2%	0.0%	11.5%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9.0%	18.2%	14.1%	7.9%	17.0%	0.0%	12.5%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12.5%	25.5%	7.3%	0.0%	16.7%	0.0%	13.5%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6%	9.0%	12.0%	4.5%	14.3%	7.4%	11.9%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3.1%	9.7%	6.7%	6.3%	13.8%	6.6%	8.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3.7%	28.7%	34.2%	15.6%	13.3%	5.6%	23.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5.1%	7.4%	10.1%	6.3%	11.2%	4.5%	6.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6.4%	25.0%	22.2%	0.0%	10.0%	0.0%	17.4%
기타 기능 관련직	10.4%	9.5%	18.2%	18.2%	10.0%	4.0%	10.3%
금융 사무직	1.0%	1.9%	7.7%	3.2%	8.3%	0.0%	2.0%

영업직	5.2%	9.5%	13.3%	0.0%	4.3%	23.8%	6.8%
행정 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0.0%	0.0%	0.0%	0.0%	0.0%	0.0%	0.0%
전문 서비스 관리직	0.0%	0.0%	0.0%	0.0%	0.0%	0.0%	0.0%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	0.0%	0.0%	1.1%	0.0%	0.0%	1.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3%	0.0%	4.6%	0.9%	0.0%	0.0%	1.2%
법률 및 행정 전문직	0.0%	0.0%	0.0%	0.0%	0.0%	0.0%	0.0%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7%	6.9%	2.1%	4.3%	0.0%	0.0%	3.0%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0.2%	23.7%	19.5%	14.3%	0.0%	33.3%	11.6%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8%	6.7%	6.3%	0.0%	0.0%	0.0%	2.3%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8%	8.3%	0.0%	0.0%	0.0%	10.0%	4.0%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1%	0.0%	10.0%	0.0%	0.0%	0.0%	4.2%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4.2%	3.8%	13.3%	0.0%	0.0%	0.0%	4.0%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1%	0.0%	4.1%	0.0%	0.0%	3.2%	1.3%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1.0%	4.8%	0.0%	0.0%	0.0%	9.1%	1.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8.4%	3.7%	4.1%	2.8%	0.0%	0.0%	5.6%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20.0%	5.6%	42.9%		0.0%	0.0%	12.2%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0%		0.0%	0.0%			0.0%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0.0%	0.0%	0.0%	0.0%		0.0%	0.0%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0.0%	0.0%	0.0%				0.0%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2.0%	12.5%	0.0%	30.0%		0.0%	12.3%
농·축산 숙련직	20.0%	33.3%	0.0%	0.0%			12.5%
임업 숙련직		0.0%					0.0%
어업 숙련직		33.3%					33.3%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16.7%	0.0%	0.0%	0.0%		0.0%	6.3%

제4장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검토 및 제안

제1절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 추진배경

- 부천시의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중견기업의 지방이전으로 말미암아 공업의 급격한 축소를 경험한 바 있고,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결과 제조업체만 하더라도 50인 이하 사업장이 99%에 이를 정도로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으로 저임금, 저숙련 중심의 노동이 압도적인 상황이었음. 이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빈부격차 증가,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고, 현재의 최저임금이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공공영역의 공공성 회복을 기반으로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부천노총은 2012년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캠페인을 주시하며 부천시와 연계 접목, 활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게 됨.

□ 부천시 생활임금 목적

- 생활임금제도는 지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과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함.

□ 부천시 생활임금의 준비과정

<표 4-1> 부천시 생활임금 준비 과정

일자	민간 확산 방안
'11.11.20	• 한국노총 부천시부의 제안으로 노사민정 본회의 안건 상정
'12.4월	• '생활임금 조례 추진위 구성' 실무협의회 의결
'12.5월	• '생활임금 조례 추진위 구성 및 사업추진' 본 회의 의결
'12.07.11	• 1차 추진위, 생활임금의 목적과 지역차원에서의 의미 논의
'12.08.07	• 2차 추진위, 조례제정을 위한 실태조사 범위 및 내용검토
'12.09.11	• 3차 추진위, 생활임금에 담아야할 내용 논의
'12.10.16	• 4차 추진위, 현행법 내 제정 가능한 조례 논의(법률 검토 요구)
'12.11.213	• 5차 추진위, 생활임금 구체화(지자체 예산지원범위 설정)
'12.11.27	• 6차 추진위, 부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 합의
'13.02.01	• 7차 추진위, 부천시 및 소속근로자로 제한하는 생활임금 수정안 마련
'13.06.17	• 생활임금제도화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개최(법적 쟁점)
'13.10.25	• 부천시의회 생활임금조례 의결(경기도 재의 요구)
'13.11.13	• 부천시 생활임금조례 재의(경기도 재의 요구 수용)
'13.12.12	• 부천시의회(강동구/안효식) 조례 재의결(28명 중 24명 찬성)
'14.01.20	• 경기도 재소 포기
'14.02.18	•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의결
'14.04.01	• 전국 최초 노사민정 합의로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시행

- 부천시 생활임금은 2014년 4월 1일 도입 이후 지속적 운영 확대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홍보 캠페인,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부터는 인건비가 시비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전면 확대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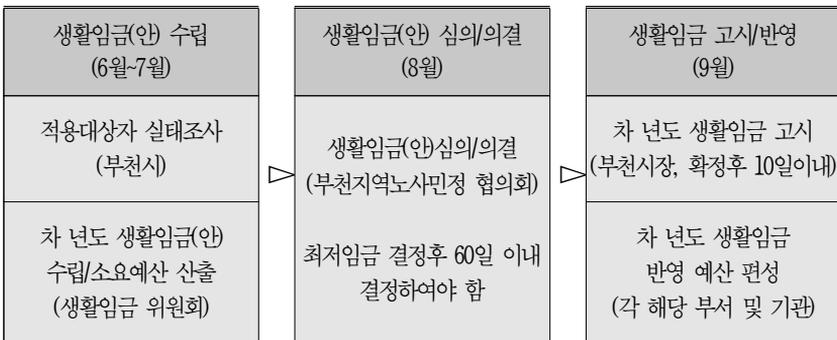
<표 4-2>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연도별 사례

연도	구분	사업
2014년	적용	• 생활임금 적용('14.04.01)
2015년	홍보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매뉴얼 제작 배포 • 부천시 생활임금 계산기 제작 •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대시민 홍보 캠페인
	토론회	•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간담회
2016년	홍보	•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대시민 홍보 캠페인
2017년	홍보	•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대시민 홍보 캠페인
2018년	확대	• 적용대상기관, 담당자 생활임금 교육(2회차)
		•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까지 전면 확대
2019년	평가/과제	• 부천시생활임금 평가 및 과제 수행, 의견수렴

□ 부천시 생활임금 시행절차 및 운영위원회

- 생활임금은 부천시가 매년 6월~7월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차년도 생활임금(안)/소요예산 등을 산출하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결정·제안함. 본협의회의(의장, 부천시장)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 부천시장은 확정 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를 가짐.

<표 4-3> 생활임금 시행 절차



- 생활임금위원회는 6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부천시생활임금 지원조례 개정, 2019.3.27. 적용으로 위원 구성은 6인에서 10인으로 확대예정)

<표 4-4> 생활임금 위원회 구성

구분		위원	인원
생활임금 위원회 (6인)	노	•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1
	사	• 부천상공회의소	1
	공공부문	•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 1인	1
	민(전문가)	• 전문 노무사/변호사	2
	정	• 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1
	실무지원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1
	자문	• 생활임금 전문 연구자	1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

-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최저임금 근로자수와 생활임금 수준이 지속 증가 추이에 있으며, 2019년 생활임금 수준 10,030원으로 결정됨.
 -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 ‘19년 생활임금 산입항목은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중 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며 시간 외 수당을 제외함.
 - 고정적 :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
 - 일률적 :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표 4-5> 생활임금 결정현황

(단위: 원, %, 명,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활임금	5,580	6,050	6,600	7,250	9,050	10,030
최저임금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최저임금 배율	107.1%	108.4%	109.5%	112.1%	120.2%	120.1%
인상률	-	8.4%	9.1%	9.8%	24.8%	10.8%
적용인원	406	481	533	492	665	
총소요예산	1.73억	4.57억	4.46억	8.29억	15.9억	

- 적용 대상자는 부천시 소속 근로자,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부천시 순수재원 지급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 임금역전 현상 방지, 근속기간 및 노동강도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반영함
- 예외규정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함. [국가사무 적용대상자로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로 적용되는 공공근로 및 직접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는 제외]

<표 4-6> 2019 임금구간 별 생활임금 인상액 적용

(단위: 원, %.)

구간금액(원)	인상액(원)	인상률(%)	적용금액(원)
~8,350	1,680	20.12	10,030
8,351~8,840	1,430	16.10	10,310
8,841~9,410	1,130	12.01	10,540
9,411~9,930	810	8.16	10,740
9,931~10,460	430	4.11	10,890
10,461~11,000	-	-	11,000

제2절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현황 및 문제점

□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현황

- 부천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는 부천시 소속 근로자,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중 부천시 순수재원 지급 대상자로 하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국가사무 적용대상자로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로 적용되는 공공근로 및 직접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 등 추가로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음.)
-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 위탁 (용역) 기관 및 단체 소속 근로자(국비/도비/시비 지원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2018년~2019년 생활임금 적용실태를 분석하였음. 2018년 DB를 통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인적특성을 파악하였으며, 2019년 DB를 통해 2020년 적용 대상자 및 사업별 소요예산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2018년 부천시 및 관련 기관의 종사자 수는 1,922명이었으며, 이중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수는 1,330명으로 인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57.6%로 남성보다 약 12%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근로시간별로는 주 별 근로시간 별로는 주 40시간 이상이 65.1% 임.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35.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시설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환경미화 분야가 31.1%로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 분야 업종에서의 생활임금 근로가 두드러짐.

<표 4-7> 2018년 인적특성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현황

구 부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총 계		1,330	100.0%	592	100.0%	1,922	100.0%
성별	남	564	42.4%	132	22.3%	696	36.2%
	여	766	57.6%	460	77.7%	1,226	63.8%
주 별 근로시간	15시간 이하	271	20.4%	97	16.4%	368	19.1%
	16시간-40시간 미만	193	14.5%	224	37.8%	381	19.8%
	40시간 이상	866	65.1%	271	45.8%	380	19.8%
연령	24 이하	44	3.3%	66	11.1%	110	5.7%
	25-29	104	7.8%	52	8.8%	156	8.1%
	30-39	163	12.3%	85	14.4%	248	12.9%
	40-49	296	22.3%	192	32.4%	488	25.4%
	50-59	304	22.9%	131	22.1%	435	22.7%
	60-64	222	16.7%	35	5.9%	257	13.4%
	65 이상	193	14.6%	17	2.9%	210	10.9%
	65세이상		0.0%	14	2.4%	14	0.7%
고용형태	정규직	384	28.9%	137	23.1%	521	27.1%
	무기계약직	473	35.6%	230	38.9%	703	36.6%
	기간제근로자	333	25.0%	174	29.4%	507	26.4%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122	9.2%	39	6.6%	161	8.4%
	일일근로자(일용직)	17	1.3%		0.0%	17	0.9%
	용역근로자(도급, 하청)		0.0%	8	1.4%	8	0.4%
직무	행정사무보조	223	16.8%	209	35.3%	432	22.5%
	시설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환경미화	413	31.1%	13	2.2%	426	22.2%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간호 및 돌봄사회서비스	148	11.1%	308	52.0%	456	23.7%
	조리배식/영양사	14	1.1%	14	2.4%	28	1.5%
	대민민원서비스	171	12.9%		0.0%	171	8.9%
	상수도 점검교제	18	1.4%		0.0%	18	0.9%
	문화예술공연전시	26	2.0%		0.0%	26	1.4%

구 부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운전	34	2.6%		0.0%	34	1.8%
기타 전문직	15	1.1%	1	0.2%	16	0.8%
기타	268	20.2%	47	7.9%	315	16.4%

- 2019년 부천시 및 관련기관의 생활임금 적용여부 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전체 활용 근로자 2,276명 중 약 54.3%만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특히 부천시 직고용의 경우 45.5%만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었음.

<표 4-8> 2019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현황

구 부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전체	1,237	54.3%	1,039	45.7%	2,276	100%
부천시	725	45.5%	867	54.5%	1,592	100%
공기업	260	92.5%	21	7.5%	281	100%
출자출연기관	34	82.9%	7	17.1%	41	100%
민간위탁기관	218	60.2%	144	39.8%	362	100%

- 고용형태에 따라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의 적용 여부 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상시근로자의 경우 853명 중 73%인 623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으나 계약 기간 2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 고용 근로자는 45.1%만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간제 등 일시고용 근로자의 다수가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임금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표 4-9> 2019 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 현황

구 분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총합계	합 계	1237	54.3%	1039	45.7%	2,276	100.0%
	상시고용	623	73.0%	230	27.0%	853	100.0%
	일시고용	614	45.1%	747	54.9%	1361	100.0%
부천시	합 계	725	45.5%	867	54.5%	1,592	100.0%
	상시고용	289	73.9%	102	26.1%	391	100.0%
	일시고용	436	38.3%	703	61.7%	1,139	100.0%
공기업	합 계	260	92.5%	21	7.5%	281	100.0%
	상시고용	159	88.3%	21	11.7%	180	100.0%
	일시고용	101	100.0%		0.0%	101	100.0%
출자출연기관	합 계	34	82.9%	7	17.1%	41	100.0%
	상시고용	22	75.9%	7	24.1%	29	100.0%
	일시고용	12	100.0%		0.0%	12	100.0%
민간위탁기관	합 계	218	60.2%	144	39.8%	362	100.0%
	상시고용	153	60.5%	100	39.5%	253	100.0%
	일시고용	65	59.6%	44	40.4%	109	100.0%

주 : 고용형태 상시고용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일시고용(계약기간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등)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의 확대방안에 따른 구체적 소요예산 산출을 위해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의 적용 여부 별 현황의 소요예산을 살펴보고, 2020년 사업 지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인원 중 내년 사업에서 지속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27명과 관련 정보가 누락된 50명을 제외한 2,199명을 대상으로 임금구간 별 생활임금의 인상액 적용하여 2020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음.

<표 4-10> 2019~2020 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소요예산

채원구분		인원(명)		소요예산(천원)		
				2019년 인건비	2020년 인건비	차액
전체	총계	합계	2,199	34,774,054	37,501,781	2,727,727
		상시	843	21,685,589	23,123,498	1,437,909
		일시	1,356	13,088,465	14,378,283	1,289,818
	시비(100%)	상시	642	17,044,224	17,981,861	937,637
		일시	949	8,638,639	9,072,125	433,486
	국·도·시비	상시	164	3,621,565	4,093,694	472,129
		일시	402	4,327,194	5,175,155	847,961
	기금 (도·시비 포함)	상시	37	1,019,800	1,047,943	28,143
일시		5	122,632	131,003	8,371	
부천시	소계	합계	1,555	19,874,745	21,684,669	1,809,924
		상시	424	10,903,713	11,508,705	604,992
		일시	1,131	8,971,032	10,175,964	1,204,932
	시비(100%)	상시	300	7,895,730	8,390,289	494,559
		일시	754	5,074,997	5,464,207	389,210
	국·도·시비	상시	91	2,090,215	2,181,377	91,162
		일시	377	3,896,035	4,711,757	815,722
	기금 (도·시비 포함)	상시	33	917,768	937,039	19,271
일시		0	-	-	-	
공기업	소계		274	6,809,341	7,027,381	218,040
		상시	173	4,622,129	4,837,320	215,191
		일시	101	2,187,212	2,190,061	2,849
	시비(100%)	상시	173	4,622,129	4,837,320	215,191
		일시	101	2,187,212	2,190,061	2,849
	국·도·시비	상시	0	-	-	-
		일시	0	-	-	-
	기금 (도·시비 포함)	상시	0	-	-	-
일시		0	-	-	-	
출자출연	소계	합계	34	693,072	726,626	33,554
		상시	19	498,388	524,761	26,373
		일시	15	194,684	201,865	7,181
	시비(100%)	상시	12	312,348	328,384	16,036
		일시	13	144,373	149,698	5,325
	국·도·시비	상시	7	186,040	196,377	10,337
		일시	2	50,311	52,167	1,856
	기금 (도·시비 포함)	상시	0	-	-	-
일시		0	-	-	-	

채원구분		인원(명)		소요예산(천원)		
				2019년 인건비	2020년 인건비	차액
민간위탁	소계	합계	336	7,396,896	8,063,105	666,209
		상시	227	5,661,359	6,252,712	591,353
		일시	109	1,735,537	1,810,393	74,856
	시비(100%)	상시	157	4,214,017	4,425,868	211,851
		일시	81	1,232,057	1,268,159	36,102
	국·도·시비	상시	66	1,345,310	1,715,940	370,630
		일시	23	330,848	411,231	30,383
	기금 (도·시비 포함)	상시	4	102,032	110,904	8,872
		일시	5	122,632	131,003	-

주 : 전체 실태조사된 인원 2,276명 중 2020년 사업 지속여부에 따라 사업 미 운영되는 인원 27명과 임금정보가 누락 된 50명 등 전체 77명 제외

- 부천시 생활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부서별 담당 공무원 및 적용기관 대상으로 현행의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 애로요인 및 문제 사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도비와 시비의 인건비 예산의 출처에 따라 차별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 동일 직무를 하더라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거나, 기존 호봉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로 인해 경력 대비 신입 근로자의 임금이 높은 임금 역전 현상의 발생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었음. 또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부천시 재정자립도 및 예산에 근거하여 하향 조정이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밖에도 임금 구간별 생활임금 인상액으로 인한 불공정 요인 등이 주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었음. 즉, 생활임금액이 상승함에 따라 상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근로자의 적용 비율이 높아짐. 2019년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제도 도입시기 노동강도 및 근속기간, 역전현상 방지 등 고려하여 생활임금 내 적정구간 설계방식으로 임금인상 효과를 제고하였으나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적정구간 설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 방지 등의 고려, 2020년 부천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우선적 협의하기로 함.

<표 4-11> 부천시 각 부서 별 생활임금 관련 문제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종합

부서	현행	문제점	개선건의
기획예산과	경기도내 시군 생활임금 현황: 생활임금 시급 8,880원~10,030원 수준인데 부천시가 10,030원으로 제일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 생활임금 시급을 하향 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부천시 재정자립도: 39.9% (경기도 31개 시군중 20위) ※ 재정자립도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2019년 1회 추경때 필수경비를 다 반영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 재원 부족으로 하반기 신규 사업 추진 지극히 어려움 - 재정부담 필수경비인 사회복지비, 전출금 등 602억원을 2회 추경때 편성해야 할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생활임금 시급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면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 요청
여성청소년과	적용대상 : 부천시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전액시비 근로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산하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근로의욕 저하 및 높은 이직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 부천시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한다 (전액시비 근로자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 근로자로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국·시비)의 경우 부천여성청소년재단(출자출연) 소속 근로자는 생활임금 지급 적용(출자출연금 보조)받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업임에도 소속기관에 따른 생활임금 미적용으로 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갈등 발생, 사기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국·시비)의 위탁기관(2개소) 소속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확대

부서	현행	문제점	개선 의견
	<p>위탁기관 (2개소) 소속 근로자는 생활임금 미지급</p>		
	<p>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지관(시비) 소속 근로자는 생활임금 지급 적용, 청소년쉼터(국·시비)의 경우 생활임금 미지급</p>	<p>사회복지시설의 동일 임금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청소년쉼터(국·시비, 2개소)는 24시간 근무하는 생활시설의 열악한 환경임에도 생활임금 미적용으로 사기저하</p>	<p>청소년쉼터(국·시비, 2개소) 소속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확대</p>
복지정책과	<p>자제임금테이블 적용자 적용 부천시, 공기업, 출자출연, 수탁기관소속 근로자로 순수 시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로자 적용</p>	<p>-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호봉제가 적용됨 → 호봉제는 장기근로 경력자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임금으로 인하여 신입직원과 경력직 직원이 차이가 없어져 장기 근로에 대한 의욕상실 및 근로자간 임금 갈등이 발생함 - 생활임금 적용 분 추경예산증액 편성 어려움</p>	<p>- 중앙정부 임금테이블 적용자 제외 - 호봉제 임금 근로자는 적용제외</p>
만화애니과	<p>○ 1년이상 근무자는 시급에 해당하는 구간별 생활임금의 값 적용 - 10,030원~11,000원</p>	<p>○ 구간별 시급에 따르는 생활임금 값을 적용할 경우, 1년이상의 경력자에게 생활임금 구간별 적용을 하는 현행제도에서는, - 1,2년의 경력자가 보다 상위경력자와의 임금격차가 없어지는 등 일부구간 급여 역전 등 근로자간 임금 갈등 초래 - 근무경력이 3년이하인 근무자인 경우에도 급여의 급격한 인상이 요구되어 인건비 예산 편성에 애로가 큼</p>	<p>○ 생활임금 구간별 적용 폐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처럼 최저생활임금 액만 명시 바람 ○ 2020년 생활임금 인상 최소화 필요</p>

□ 부천시 생활임금의 주요 문제점 및 이슈

-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방식은 전 년 생활임금 수준에 산입항목(임금 인상률/지방세수입전망/생활물가지수/조정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2019년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기존 부천시 생활임금의 결정방식을 적용하여 결정되었다기보다는 2019년 급상승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역산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현행 생활임금의 수준이 부천시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천시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논리적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부천시 생활임금의 적용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 생활임금의 수준은 10,030원 적용, 이는 생활임금의 1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의 120.1%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에 따라 시 예산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음. 2019년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 68.4% 대비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41.0%로 낮아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자가 많아지고 금액이 급격히 올라간다면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행 대상자와 확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정책목표를 명확, 전략적으로 확대·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활임금제의 적용 대상자가 현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로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국가사무 적용대상자로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제로 적용되는 공공근로 및 직접일자리사업 종사 근로자는 제외)함에 따라 생활임금이 직무, 경력, 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의 합리적 차이가 아닌 인건비 예산의 성격에 따라 생활임금 대상이 결정되어 임금 불공정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 되고 있음. 이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예외 사항을 합리적 조건으로 재조정하여 생활임금으로 인한 불공정성 등을 합리적 차이로 인식 전환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 이러한 상황에도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을 매개로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적용대상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지속적·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그러므로 적용대상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포함)의 직접 고용 뿐 만 아니라 공공조달계약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보조금·감세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로 확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생활임금제도 취지가 저임금 해소(빈곤)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방안이 무엇보다 고민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천시 생활임금 민간부문 확산은 민간위탁, 용역 등을 우선적 확산을 목표로 점차 지역 내 강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순수 민간기업 등 적용방안과 부천시의 행정적 지원사업 등을 통한 확산 적용방안 모색을 통해 확산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제3절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 모델(안)

- 생활임금 시행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 큰 상황에서 향후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한 금액(1만원)에 도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은 다른 정책방향으로 제시될 개연성이 있음.
- 2019년 부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보다는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의 사회적 환경, 분위기에 맞추어 부천시 생활임금 10,000원 이상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19년 생활임금을 ‘18년 생활임금의 수준에 산업항목(임금인상률+지방세수입전망+생활물가지수+조정분)을 조정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 + %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형태임. 이에 부천시 현재의 생활임금의 결정기준은 결정 방식에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따라서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의 점진적인 검토, 개선이 필요함.
- 주요 변화되는 방식으로는 생활임금은 기존 운영 모델을 유지 개선하는 방식(상대적 방식/평균임금 비례 기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운영 모델 방식(절대적 방식 + 상대적 방식)을 고안할 수 있음.
- 생활임금 운영모델을 절대적 방식을 이용한 가구의 가계지출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산출방법과 상대적 방식을 이용한 임금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봄.
- 가구의 소비지출을 반영하여 산출방법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반으로 물가수준을 더하여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최저생계비가 아닌 가계동향조사 등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실제지출을 계산하여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보다 계산이 간편한 장점이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자 임금을 토대로 생활임금을 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 혹은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 다음은 기존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원(서울시, 광주시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모델을 토대로, 부천시의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자료 또는 부천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임금의 결정 기준과 적용 대상자 별로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각 안 들 중 아래와 같이 유형4 방식의 시로부터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근로자를 포함하는 안을 최적으로 도출하였음.

<표 4-12>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설계 방향

임금 금액 결정 기준	대상	1)시 소속 근로자	2)시 산하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소속 근로자	4) 3)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5) 외주화된 계약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6)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유형 1. 최저생계비 방식							
유형 2. 노동자 임금 방식 - 월평균 급여기준							
유형 3. 가계소득 기준							
유형 4. 최저생계비+실제지출							

1) 최저생계비 방식¹⁾

- 평균 가구원수를 고려한 2019년 최저생계비에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평균 가구원수를 4명으로 가정하고 산정하였으나 최근 2016년 평균 가구원수는 3.13명으로 가구원수가 3명인 경우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임.
- 3인 가구 구성은 맞벌이부부(전일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각 1인)와 사교육을 받는 자녀 1인으로 가정하며 기존 근로시간인 365시간은 변동이 없음.
- 2019년 최저생계비²⁾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비용으로 2014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근로자의 최저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했음.
- 그러나 2016년 이후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³⁾의 60/100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생활임금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구원별

-
- 1) 이는 가구의 지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최저생계비 외에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 또는 3인 가구의 가계지출의 상대적 빈곤 기준인 50%를 적용한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계지출 수치보다 최저생계비가 더 높게 나타나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생계비 방식만을 제시함.
 - 2)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단일화 한다고 발표. 그래서 최저생계비와 연계된 복지사업이 모두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으로 산정되고 있음. ‘기준중위소득’은 총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서를 매긴 뒤 평균을 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 가구소득 등으로 변동 가능.
 - 3)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제공되고 있음.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가구	1,562,337	1,624,831	1,652,931	1,672,105	1,707,008	1,757,194
2인가구	2,600,196	2,766,603	2,814,449	2,847,097	2,906,528	2,991,980
3인가구	3,441,364	3,579,019	3,640,915	3,683,150	3,760,032	3,870,577
4인가구	4,222,533	4,391,434	4,467,380	4,519,202	4,613,536	4,749,174
5인가구	5,003,702	5,203,849	5,293,845	5,355,254	5,467,040	5,627,771
6인가구	5,784,870	6,016,265	6,120,311	6,191,307	6,320,544	6,506,368

최저생계비에 2017-2018년 부천시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3인 가족 기준).

- 부천시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18년 물가상승률은 1.2로 전국 물가상승률 1.5(서울시 2018년 물가상승률은 1.3)에 비해 다소 낮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편임.
- 또한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국이 100.45에 비교하여('15년 100기준) 부천시는 104.56으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 전국 기준, 최저생계비를 활용, 부천시의 물가상승률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서울연구원 연구결과 서울의 물가상승률이 전국 수준보다 16% 더 높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생활임금 산정시 타 지역보다 높은 물가수준 16%를 적용한 바가 있음)됨.

<표 4-13>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방식 생활임금 모델(단위 : 원)

포함항목	금액
2019년 3인 가족 최저생계비	2,256,019(기준 중위소득: 3,760,032)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	33,840
합계	2,289,859
2020년 생활임금(안)	6,274 (월 1,311,180원)

주)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100

소비자 물가상승률: 2018년 부천시 물가상승률은 1.5%

- 2019년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2,256,019원으로(기준중위소득 3,760,032원의 60/100) 부천시 또한 전국 수준과 비교 시 물가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어 소비자물가상승률만 고려하였음.
- 최저생계비에 2019년 물가상승률만큼 추가하여(33,840원) 생활임금으로 산정. 이에 대한 생활임금은 가구원 총 노동시간(365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본바 시급 6,274원으로 산정됨.

- 이 방법은 가족임금으로서 생활임금에 부합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에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적정수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없어지고 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2) 노동자 임금 방식 - 월평균 급여기준

-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의 50%에 전국 대비 해당지역의 생활물가 수준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임.
- 전국 타 지역에 비해 서울시가 16% ~ 32%정도 물가수준이 더 높다는 판단 하에 서울시의 생활임금 산정 계산에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8%의 물가수준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음.

<표 4-14> 노동자 임금 방식 생활임금 모델(단위 : 원)

포함항목	1인(60%)	2인(50%)
2018년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1,903,094	1,585,912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	28,546	23,789
합계	1,931,640	1,609,701
2020 생활임금(안)	9,242	7,702

주)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18)

1인 :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60%로 적용

2인 :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50%로 적용

소비자물가상승률: 2018년 부천시 물가상승률은 1.5%

- 2018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는 3,171,823원으로 상대적 빈곤선 기준이 되는 50%수준을 적용해보면 1,585,912원으로 나타남. 최근 이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인 빈곤선 기준을 OECD 기준인 60%로 올리는 경우도 있음.
- 그래서 이번 연구 모델 분석에서는 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50%와 60%로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음(상대적 빈곤선 기준을 60%로 적용 시 1,903,094원)
- 노동자 임금 방식은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으로 생활임금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별 최저생계비나 저소득층의 가구별 가계지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

3) 가계소득 기준

- 3인 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3인 가구 소득 자료에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빈곤 기준을 적용한 후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임금 계산
- 통계청 가구동향조사에 의한 2019년 전국 3인 가구 가계소득은 5,638,333원으로 상대적 빈곤 기준을 50%로 적용하면 2,861,455원. 상대적 빈곤 기준을 60%로 적용하면 3,433,745원으로 나타남.
- 부천시의 경우 전국 수준의 물가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높은 편이 아니므로 전국 수준의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여 따로 추가적인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계 구성원의 근로시간 365시간으로 나누어 생활임금을 산정.
- 생활임금 시급이 상대적 빈곤 기준을 60%로 적용한 경우 9,408원, 50%로 적용한 경우 7,840원으로 나타남.

<표 4-15> 가계소득 기준 생활임금 모델(단위 : 원)

포함항목	1인(60%)	2인(50%)
2018년 3인 가구 소득	3,383,000	2,819,167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분	50,745	42,288
합계	3,433,745	2,861,455
2020년 생활임금(안)	9,408 (1,966,172)	7,840 (1,638,477)

주) 3인 가구 소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 1인 이상)

소비자물가상승률: 2018년 광주광역시 물가상승률은 1.5%

*자료 :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각 년도.

- 이 방법은 가계전체의 상대적 빈곤 기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지만 실제 가구별로 생활에 필요한 지출수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존재함.

4) 최저생계비+실제지출

-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임금으로써 역할과 가계지출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한 생활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여러 보완을 하고자 함.
 -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되어 가계소득 기준의 생활임금 모델 장점에도 부합할 수 있고, 자료의 접근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앞서 최저생계비만으로는 가구의 생활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최저생계비에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일부항목은 부천시의 특성 및 가계 현실을 고려하는 모델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 부천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후 다양한 가구의 지출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거비와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비 등의 항목을 현실화하였음. 즉, 최저생계비에 실제 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산정.

- 통계청에서 가구원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시 3인 가족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가계지출과 관련해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 가구원별로 전체 가계지출을 알 수 있으며, 각 소비항목별로 금액을 제시하고 있음.
- 3인 가족 근로자 가족 기준 ①주거비(296,164), ②통신비(173,571원), ③교통비(432,906), ④사교육비(210,971원), ⑤오락,문화비(249,660원)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각각 60%, 50%의 상대적 빈곤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최저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출은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출이라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생활비에 대해 각각의 제시안(모델 1 ~ 모델 6)을 다르게 산정하였음.(교통비는 모두 100% 적용)⁴⁾
 - ✓ 모델 1 : 추가적 생활비 70% 적용 → 9,523원
 - ✓ 모델 2 : 추가적 생활비 80% 적용 → 9,789원
 - ✓ 모델 3 : 추가적 생활비 90% 적용 → 10,054원
 - ✓ 모델 4 : 추가적 생활비 모두 100% 적용 → 1만 10,319 원
 - ✓ 모델 5 : 추가적 생활비 OECD의 상대적 빈곤선 기준 60% 적용 → 9,258원
 - ✓ 모델 6 : 추가적 생활비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선 기준 50% 적용 → 8,993원

4)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의 상대적 빈곤선은 50%, 60%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양한 생활임금 모델을 위해 실제지출을 상대적 빈곤선을 60%, 50%로 적용한 모델 외에 추가로 3가지 안을 제시(교통비 100% 적용)

<표 4-16> 3인 가족 기준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1(단위 : 원)

포함항목	모델 1(70%)	모델 2(80%)	모델 3(90%)
최저생계비	2,256,019	2,256,020	2,256,021
+ ①주거비	207,315	236,931	266,548
+ ②통신비	121,500	138,857	156,214
+ ③교통비	432,906	432,906	432,906
+ ④사교육비	147,680	168,777	189,874
+ ⑤오락,문화비	174,762	199,728	224,694
(소계)	3,340,181	3,433,219	3,526,256
+ ⑥ 소비자물가상승 증가분	50,103	51,498	52,894
합계	3,390,284	3,484,717	3,579,150
2018년 생활임금(안)	9,523 (1,990,363)	9,789 (2,045,803)	10,054 (2,101,243)

* 주) 모델 1 : 가계지출에 대한 상대적 빈곤 기준을 70%로 적용

모델 2 : 가계지출에 대한 상대적 빈곤 기준을 80%로 적용

모델 3 : 가계지출에 대한 상대적 빈곤 기준을 90%로 적용

* 자료 :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100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문화비: 2018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1인이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 4-17> 3인 가족 기준 부천시 생활임금 모델2(단위 : 원)

포함항목	모델 4(100%)	모델 5(60%)	모델 6(50%)
최저생계비	2,256,019	2,256,019	2,256,020
+ ①주거비(전용면적 59.96㎡)	296,164	177,698	148,082
+ ②통신비	173,571	104,143	86,786
+ ③교통비	432,906	432,906	432,906
+ ④사교육비	210,971	126,583	105,486
+ ⑤오락,문화비	249,660	149,796	124,830
(소계)	3,619,291	3,247,145	3,154,109
+ ⑥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분	54,289	48,707	47,312
합계	3,673,580	3,295,852	3,201,421
2018년 생활임금(안)	10,319 (2,156,681)	9,258 (1,934,924)	8,993 (1,879,486)

* 주) 모델 6 : 가계 지출을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인 50%로 적용

모델 5 : 가계 지출을 OECD의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인 60%로 적용의 경우

* 자료 :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의 60/100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오락문화비: 2018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도시,1인이상),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이 모델은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충족한다는 장점 외에 가구 내에서 필요한 지출 수준을 반영하여 보다 생활임금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음. 추가적 생활비 산정을 위한 방법 및 자료 구성이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이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 산입항목(Pay mix & Structure) 검토

- 사업부서, 산하기관, 민간위탁 등 임금제도 차이를 고려해 보면 산입 항목은 ‘기본급+식비+교통비’ 로 통일하거나 법정기준(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기본급+통상수당) 혹은 ‘기본급’ 등의 방향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행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인 2안을 추천함.

-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추진 등을 고려한다면 산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유지할 필요 있음.

- ✓ 1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 2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통상임금’(⇒ 추천안)
- ✓ 3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기본급’
- ✓ 4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통상임금’ +역할/복지 수당
- ✓ 5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통상임금’ +성과 수당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 수당)

<표 4-18> 생활임금 금액 적용 산입 기준 검토 프로세스 안

생활임금적용 임금구성 1	생활임금적용 임금구성 2	생활임금적용 임금구성 3	생활임금 적용 임금구성 4	생활임금적용 임금구성 5
(1) 기본급	(1) 기본급	(1) 기본급		
(2) 식대	(2) 통상적 수당			
(3) 교통비				
			+ (5) 역할수당 (6) 복지포인트 (7) 기말수당 (8) 가족수당	
				+ (8) 상여금 (9) 명절수당

주 : 광주지역 각 지자체 임금분석 결과, 기본급 및 공통 수당(역할수당, 복지포인트, 기말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수당, 교통비, 식대) 이외의 다양한 계수당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제5장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방안

제1절 생활임금 민간확산 논의

- 현재 생활임금 시행 지자체 중 광역(서울시, 광주시), 기초(서울 성북, 경기 수원, 경기 부천, 충남 아산, 전주 등)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민간 확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해당 지자체는 현재 입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임금제의 적용범위·대상을 직접고용에서 간접고용이나 민간위탁, 기타 지원 사업, 순수민간 영역으로 적용대상 확대 논의가 있음.
- 문제는 현재 주요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확산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강소기업)와 성북구(2곳 대학) 제외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설명회, 홍보 수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비율(학계 43%)이 높고, 저임금 해소를 위한 법정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부천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여성 저임금(남성 6.7%, 여성 34.5%로 남성보다 여성이 7배가량 높음)이 확인되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성 저임금 직종(생산직, 단순 노무직, 돌봄, 사회 서비스)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표 5-1> 지자체별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 노력

지자체	민간 확산 방안
서울 성북구	- 성신여대, 한성대학 양해각서 체결(청소용역 적용) - 구청 민간위탁 어린이집 직용, 관내 주요 기업체 방문 설명회
서울 은평구	- 관내 기업 설명회
서울 동작구	- 관내, 학교와 공공기관 설명회
경기 화성시	- 공공부문 내 민간 사무위탁, 업체 소속 근로자 등으로 우선 확대 검토
광주 광산구	- 아파트 경비 등 생활임금 지급 위해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협조 양해각서 체결
전북 전주시	- 전주시로부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업 등으로 점진적 확대 검토
서울특별시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자회사(4곳), 민간위탁 시비 100% 적용 - 강소기업(6곳), 사회적 기업 가점, 서울신용보증재단 우대 상품 적용

○ 특히 민간부문 확대 시 해당 기업의 고용형태(직접고용 간접 근로 vs. 단시간 및 일용근로 vs. 간접고용 파견용역)까지 적용할 것인지, 모든 직종과 일부 직종(모든 저임금 직종 vs. 일부 특정 직종)만 적용할 것인지, 편성과 특수성(법인 전체 사업장 vs. 해당 지역 사업장)에 따라 논의 수준의 차이가 있음.

- 지자체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향은 ‘현실적 상황’ 과 ‘정책방향 모색’ 이라는 차원에서 2가지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 이 사이 중범위 수준에서 ‘지원사업’ 을 통한 민간 확산도 검토되고 있음.
 - 제한적으로 생활임금 확산은 기업 인증, MOU와 병행하여 부천시의 다양한 사업 지원제도(주관 행사와 축제, 영화제 등)에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는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에 갖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런던 사례 등을 통해 연구, 추진되었던 것과 일치함. 그러나 이때 공공계약 과정에서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련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강조함.¹⁾
- 이는 대규모 민간부문 사용자에게 확대시킬 때 중요하며, 중소기업 사용자에게까지 확대시킬 때에는 세제 혜택 등 보조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음.

□ 인식제고 통한 생활임금 내실화 추진

- 현재 부천시는 지역 경제상황과 정책 전략에 따라 생활임금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나, 생활임금제도 자체가 출발한지 5년 안팎에 불과하고, 여전히 생활임금 시행 대상(적용범위) 또한 협소한 상황임.
- 한편 부천지역 내 기업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며, 공공부문 내부에서도 생활임금 행정담당의 인사이동으로, 행정조직 내에서도 내용적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지난 수 십년 동안 지자체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일용직, 파견직 등)과 민간위탁 사업장의 임금이 예산과 부서의 자의성에 기초하여 설정되어, 차별을 고착한 문제점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논의 과정에서 ‘임금 통일화’ 및 ‘동일 노동 동일임금 실현’ 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각 지자체의 사업, 고용형태, 직종·직무, 지급 시기(일급, 주급, 월급) 등 차이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함.

1) Lawton and Pennycook(2013)는 생활임금제에 관한 6가지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둘째,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셋째, 생활임금 시행의 주요한 이득은 재정에서 발생한다. 넷째, 생활임금제를 순전히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만들면 실패함. 다섯째, 생활임금은 근로연계형 복지(in-work benefit)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여섯째, 생활임금 캠페인은 단지 임금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지자체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향은 ‘현실적 상황’ 과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2가지 접근법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 이 사이 중범위 수준에서 ‘지원사업’을 통한 민간 확산도 검토되고 있음.
- 제한적으로 생활임금 확산은 기업 인증, MOU와 병행하여 부천시의 다양한 사업 지원제도(주관 행사와 축제, 영화제 등)에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이는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에 영국 런던사례 등을 통해 연구, 추진되었던 것과 일치함. 그러나 이때 공공조달계약 과정에서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련한 사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이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임을 강조함.²⁾
- 이는 대규모 민간부문 사용자에게 확대시킬 때 중요하며, 중소기업 사용자에게까지 확대시킬 때에는 세제 혜택 등 보조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자체와 사회정책과 연계 필요성

- 시장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왜곡된 시장 작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과 저임금·빈곤 해소, 노동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표를 연계 시킴으로써 사회정책 수단 확장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의 연계가 필요함.

2) Lawton and Pennycook(2013)는 생활임금제에 관한 6가지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님. 둘째,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셋째, 생활임금 시행의 주요한 이득은 재정에서 발생한다. 넷째, 생활임금제를 순전히 공공부문에 국한된 것으로 만들면 실패함. 다섯째, 생활임금은 근로연계형 복지(in-work benefit)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여섯째, 생활임금 캠페인은 단지 임금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 홍보와 인식 확산

- 생활임금 시행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자체, 기업,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주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필요함.

□ 생활임금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 예산 및 인원문제를 고려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 경우처럼 단계별 절차에 따른 시행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현재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지자체(시·동)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로 두고 있으나, 권고방식 등으로 시가 발주하는 용역·민간위탁 소속에 적용하는 것임.
 - 물론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지자체 공공조달·위탁계약, 물품공급업체, 시설임대업체 등 노동자들까지 확대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공공기관 계약 당사자로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 각종 규제 및 계약 요건 제안

- 현재 지자체 생활임금제 확산의 제약 요인인 국가·지방 계약법과 지자체 기준 인건비(산하기관 총인건비)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 이미 19대, 20대 국회의 입법안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생활임금제 시행이 명시되어 있기에 지자체와의 입찰계약에 생활임금 수준이상 보장을 의무화 규정 마련해야 민간 확산 여지가 높음.

제2절 생활임금 운영 내실화

- 현재 부천시 경우 생활임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19년 생활임금을 ‘18년 생활임금 수준에 산입항목(임금인상률+지방세수입전망+생활물가지수+조정분)으로 조정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최저임금 + % 방식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형태임.
- 생활임금 시행이 낮은 최저임금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 큰 상황에서 향후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한 금액(1만원)에 도달할 경우에 지자체 생활임금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제시될 개연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부천시 현재의 생활임금 결정 기준은 결정 방식에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음. 따라서 시와 구청 생활임금 운영 모델의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생활임금은 기존 운영 모델을 유지 개선하는 방식(상대적 방식 / 최평균임금 비례 기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운영 모델 방식(절대적 방식 + 상대적 방식)을 고안 할 수 있음.
 - 다만 지역 사회에서 생활임금 운영 모델 통일성은 정책적 판단과 시의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내부 의사결정 단위의 논의(시청과 구청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표 5-2> 주요국의 상대 빈곤선

구분	상대 빈곤선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성북구 모델, 5인 이상 사업체 정액급여 50%에 전국 대비 해당 지역의 생활물가 수준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1안을 설정하여 분석했으며, 2안은 3인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을 구하는 방식으로 3인 가구 소득 자료에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빈곤 기준을 적용한 후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음.

□ 생활임금 결정 기준

- 부천시 저임금 근로자 성별 비중은 남성 6.7%, 여성 34.5%로 여성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며, 연령에서는 60대 이상이 55.2%(6개 도시 평균 47.2% 수준 보다 약 5% 높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20대 이하가 25.8%를 차지하였음. 업종별로 보면 석유 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숙박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의 업종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50% 내외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 여성근로자 활용이 높은 제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 있음.

□ 산업범위 명확화

- 생활임금 조례와 정책의 통합성을 위해 시와 구청의 생활임금 산업 기준(임금 구성)이 다른 것부터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현재 각 기관, 부서, 고용형태별 임금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차별을 고착하는 요인이 됨.
- 부천시 생활임금 결정 산업 임금 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 혹은 제수당 등 각각 산업기준의 차이가 있음. 이는 지역사회의 생활임금

시행의 오해(숫자의 함정)가 있기에 금액은 다르더라도 산입 기준의 동일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내 사업부서, 산하기관, 민간위탁 등 임금제도 차이를 고려하면 ‘기본급+식비+교통비’로 통일하거나 법정 기준(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 혹은 ‘기본급’ 등의 방향으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현행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인 2안을 추천함.

- ✓ 1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기본급 + 식대 + 교통비’
- ✓ 2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통상임금’
- ✓ 3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기본급’
- ✓ 4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통상임금’ +역할/복지 수당
- ✓ 5안 생활임금 산입 기준 : ‘통상임금’ +성과 수당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지급 수당)

[그림 5-1] 생활임금 금액 적용 산입 기준 검토 프로세스 안

생활임금 적용 임금구성 1	생활임금 적용 임금구성 2	생활임금 적용 임금구성 3	생활임금 적용 임금구성 4	생활임금 적용 임금구성 5
(1) 기본급	(1) 기본급	(1) 기본급		
(2) 식대 (3) 교통비	(2)통상적 수당			
			+ (5) 역할수당 (6) 복지포인트 (7) 기말수당 (8) 가족수당	
				+ (8) 상여금 (9)명절수당

주 : 부천시역 기본급 및 공통 수당(역할수당, 복지포인트, 기말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수당, 교통비, 식대) 이외의 다양한 제수당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음

제3절 생활임금 적용확대 방향

- 광주시 생활임금 적용 확산은 정책 실현 가능성(행정 수단)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 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또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음

<표 5-3> 부천지역 생활임금 적용 확산의 단계별 검토 방안

단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적용 대상	고용형태	예시	적용 대상	고용형태	예시
1차	단순 노무도급	파견 용역	단순노무 인력 비정규직	일회적 행사 지원 사업	기간제 시간제	축제/대회/ 영화제
2차	민간위탁	무기계약 비정규직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 센터	제3섹터 강소 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 기업 강소 기업
3차	일자리 보조 공공근로 보조금 사업	기간제 시간제	국시비 매칭 보조 사업	준공공적 사업장	비정규직	법률, 연구기관 대학/병원 /은행
4차	교육청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학교 공공기관 지사/지점	민간기업	직접고용 비정규직	지역 언론사 향토 기업 대표 기업

<표 5-4> 부천시 생활임금 운영모델 설계 방향

대상	공공부문				민간부문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단순 노무도급	민간위 탁	일자리 보조 공공근	교육청 공공기관	일회적 행사 지원	제3섹터 강소 기업	준공공적 사업장	민간기 업

임금 금액 결정 기준			로 보조금 사업		사업			
유형 1 최저생계비 방식								
유형 2 노동자 임금 방식 - 월평균 급여기준	1안_To-be(성북구 모델)							
유형 3 가계소득 기준	2안_To-be(서울시 모델)							
유형 4 최저생계비+실 제지출								

- 2020년 사업의 지속운영 예정인 인원은 전체 2,242명으로 이중 생활 임금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 970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안하며, 전체 970명 근로자를 생활임금 근로자 전체 적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약 364,595,975천원이 필요함.

<표 5-5> 모델 4유형 적용에 따른 2020부천시 고용형태별 생활임금 적용(안)

구 부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확대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단위:천원)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단위:천원)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총 합 계	합 계	1,222	54.5%	1,122,323,452	970	43.3%	364,595,975	2,242	100.0%	1,493,064,577
	상시고용	623	27.8%	964,946,842	226	10.1%	251,850,931	849	37.9%	1,216,797,774
	일시고용	599	26.7%	157,376,610	794	35.4%	118,890,193	1393	62.1%	276,266,803
부 천 시	합 계	717	32.0%	647,718,323	848	37.8%	143,311,465	1565	69.8%	791,029,789
	상시고용	289	12.9%	583,800,253	98 (2차 적용 확대 대상자)	4.4%	93,039,145	387	17.3%	676,839,399

구 부	2019년 생활임금 적용 여부 별 현황							총 계		
	생활임금 적용			생활임금 미적용 확대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단위:천원)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단위:천원)	인원 (명)	비중 (%)	소요예산	
공 기 업	일시고용	428	19.1%	63,918,070	750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33.5%	50,272,320	1178	52.5%	114,190,390
	합 계	260	11.6%	218,984,260	21	0.9%	27,550,356	281	12.5%	246,534,616
	상시고용	159	7.1%	152,290,790	21 (3차 적용 확대 대상자)	0.9%	27,550,356	180	8.0%	179,841,146
	일시고용	101	4.5%	66,693,470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0.0%		101	4.5%	66,693,470
출 자 출 연 기 관	합 계	34	1.5%	27,202,365	7	0.3%	6,657,510	41	1.8%	33,859,875
	상시고용	22	1.0%	19,472,335	7 (4차 적용 확대 대상자)	0.3%	6,657,510	29	1.3%	26,129,845
	일시고용	12	0.5%	7,730,030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0.0%		12	0.5%	7,730,030
민 간 위 탁 기 관	합 계	211	9.4%	228,418,504	144	6.4%	193,221,793	355	15.8%	421,640,297
	상시고용	153	6.8%	209,383,464	100 (4차 적용 확대 대상자)	4.5%	124,603,920	253	11.3%	333,987,384
	일시고용	58	2.6%	19,035,040	44 (1차 적용 확대 대상자)	2.0%	68,617,873	102	4.5%	87,652,913

□ ‘공공부문 적용확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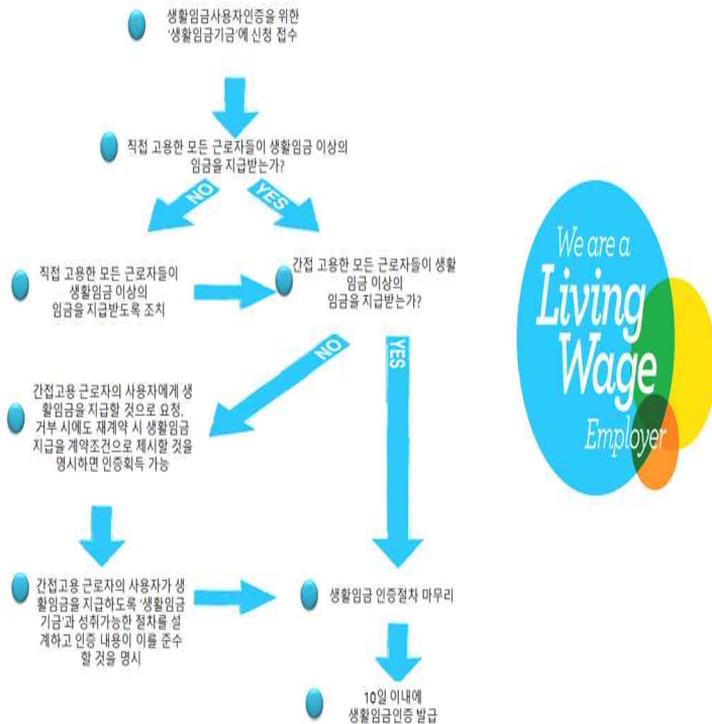
- 1차 적용 확대 영역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흐름을 반영하여, 지자체 내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곳(시구청 및 산하기관 파견용역 간접고용 노동자)
- 2차 적용 확대 영역
 -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위탁사업비 지원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곳(시·구청 민간위탁 : 사회복지, 청소년시설, 어린이 집, 각종 센터 등)
- 3차 적용 확대 영역
 -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직접적 지원을 통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곳’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보조금 지원 사업)
- 4차 적용 확대 영역
 - 생활임금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주로 지역 내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부천시 지역 교육청, 지역 중앙 공공기관)으로 적용하는 것임.

□ ‘민간부문 적용확대 영역’

- 1차 적용 확대 영역
 - 생활임금 민간 확산의 중범위 차원에서, 주로 지자체 ‘특정 핵심·연례행사’ (축제, 부천 영화제, 국제적 운동경기 등)에 적용 검토
- 2차 적용 확대 영역
 -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고려하여, 주로 지자체가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곳’ (강소 기업, 사회적 기업 등 ‘가점’)을 적용 검토

- 3차 적용 확대 영역
 - 생활임금 민간 확산의 시범적 차원에서, 지역 내 주요 ‘민간 범무법인, 연구기관’ 이나 ‘준공공적 지역 내 사업장’ (대학, 병원, 은행)에 적용 방향 검토
- 4차 적용 확대 영역
 - 생활임금 민간 확산의 궁극적 차원에서, 지역 내 주요 ‘순수 민간 기업’ 이나 ‘특정 기업의 사업장’ 에 적용 확대 검토 (인증제)

[그림 7-2-2] 영국 런던 민간 생활임금재단 인증제도 운영 사례(2016)



자료: Living Wage Foundation 홈페이지(2016)

제4절 생활임금 적용 확대방식

□ 생활임금 적용 확대방식 세부 검토 - 공공행정 조직 지원

- 영세중소사업체 노무·세무 컨설팅 지원
- 광주지역 영세사업체 노무, 세무 업무 지원 통한 방식
 - ☞ 서울, 경기 영세사업체 ‘마을 노무, 세무사’ 지원→ 부천시 ‘생활임금 지급’ 매칭 운영
 - ☞ 부천시 ‘소상공인 원포인트 방문 컨설팅’ (민생경제, 기업지원, 소상공) 사업 매칭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천시역 1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컨설팅
- 지원절차 :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에 따른 노무, 사무사 방문 지원

㉡ 市 기업지원, 소상공인 관련 부서와 홍보·신청·접수 관련 협업체계 마련

- 고객센터(노무사, 세무사 사업안내), 광주신용보증재단(홍보·신청·접수)

㉢ 지역 노무, 세무 지원 사업홍보 계획수립·실행

-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자치구·신용보증재단 지점 등 대상 배포
- 부천시 다양한 행사 참가업체 대상으로 홍보
- 신용보증재단 주최 ‘일자리박람회’ 참가 (별도 부스설치)

- 부천시 공공계약 및 조달 가점, 인증 지원
- 광주시 입찰계약 적용심사 가점(1점) 통한 방식
 - ☞ 서울시 2017년 시행→ 광주시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 검토

①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생활임금 신설(가점)

영역	심 사 항 목	평점(점)
기존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나.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다.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0.5 0.5
	라.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마. 지연배상금 - 최근 1년간 당해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단,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0 △0.5 △0.25
	바.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자(단순노무형 일반용역에 한함)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2) 행정처분을 받은 자	△2.0 △1.0
	사. 부정당제재	-
신설 검토	아. 생활임금 준수 기업 -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관한 조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1.0

②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점수 (배점한도)		비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1	0	
(신설 추가) 1-1. 헌법의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입찰 및 조달, 건설 등에 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1	0	
계	3	0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사항”은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제정 2015-05-15 조례 제 4510호, 시행 2015.07.01.)와 동 조례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 고지 등) ①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에 따른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 국가 의무와 시 의무 규정 근거

가. 헌법 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부천시 공공계약 및 조달 가점, 인증 지원

- 부천시 신용보증재단 상품(우대 조건)

☞ 서울시 2017년 시행 → 광주시 2020년부터 시행 검토

: 부천시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특례보증상품’ 등 개발하여 중점홍보 추진

[사례]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지원 대상 기준

* 기준 : 5개(‘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등)

* 추가 : 11개(‘생활임금적용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청년고용기업’ 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기업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

+

추가	생활임금*적용기업	당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 이상 지급기업
	일자리창출기업	①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기업 ② “Hi-Seoul 공동브랜드 드사업” 참여기업
	청년고용기업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경력단절여성고용기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고용구조우수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고성장 기업	①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②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서울시 주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별 기업 지원계획 (2017, 단위: 억원)

자 금 별	'17년 지원액	지원대상	용자 한도, 조건
시중은행협력 자금 (경영안정자금)	8,100	시중은행 대출금리 중 이차보전	
일 반 자 금	경제활성화 자금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창업자금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소 상공인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 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창업후 5천만원이내 추가가능) · 이차보전 1.0~1.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 접수일기준 직전 분 기말, 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한 기업 · 여성가장, 한부모 가 정을 3개월이상 고용기 업, 생활임금참여정 업, 청년고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특 별 자 금	사회적기업 자금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 등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사회보험입 촉진자금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 청일이전 3개월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 금융채무 부담 완화 및 재창업 지원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 경쟁력·자생력 제고 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 방안 발표자료(2017.7.16.)한바 있음.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노동센터(2016),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봉(2017), 「생활임금제시행성과모니터링」, 서울연구원.
- 김종진(2016),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최봉(2014), 「서울시 생활임금 제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최봉(2016),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전략방안」, 서울연구원.
- 권순원·김진·박용철·정경은(2013),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진희(2014), 미국 생활임금 논의 재고찰: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임금은 가능한가, 미국학논집, 46(3), 한국아메리카학회, pp.53~74.
- 김종진(2015), 「생활임금 논의 의미와 사회적 시사점 :어떤 임금이 필요한가의 물음」, 《노동리뷰》, 제119호, 한국노동연구원, pp.5~15.
- 김종진(2016), 「지방정부 노동정책으로서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서울지역 생활임금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생활임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16서울시 생활임금의날 토론회, 서울시 노동정책과. pp.47~79.
- 김종진·박용철·이정아·송민정(2016), 『아산시 중장기 노동정책 수립과 생활임금 실행방안 연구』, 아산시.
- 김유선·김종진·박용철·채준호·곽상신·이주환·홍관희(2015),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 연구용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남신·정홍준·남우근·이정아(2016),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이정희(2012),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p.54~63.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http://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부록] 지자체별 생활임금 적운영 및 적용실태

연번	지자체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1	광주광역시	10,090	10,353	477,931 (1-6월 조사기준)	730 (1-6월 조사기준)	총액기준 (초과, 연차수당 제외)	광주광역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임금 지급 기준 이 없는 경우 생활 임금 적용 검토	용역, 공사 등을 제공하 는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직접 고용 근로자 에 대한 적용방 안 검토
2	광주광역시 북구	10,090	10,353	809,624	49	통상임금	1.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근로자 (전액구비 직접수행 근로자)	미적용	적용	검토 중	
3	서울특별시 도봉구	10,041	10,523	2,414,008	219	통상임금	도봉구,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액 구비 직접수행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미적 용	미확대
4	서울시 강서	10,040	미정	418,950	133	통상임금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연번	지자체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구						(1일 8시간, 주5일, 9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부천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전액시비 직접수행 근로자)				
5	부천시	10,030	10,400	2,310,000	1,066	통상임금	부천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전액시비 직접수행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국·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6	아산시	10,030	10,030	1,004,677	363	통상임금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국도비 포함) 소속 근로자	적용	미적용	적용 중	검토중
7	경기도	10,000	10,364	산출내역 없음	3,518	통상임금	1. 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적용	적용	해당 없음	해당없 음
8	과천시	10,000	10,290	900,000	100	기본급+통 상임금	과천시, 출자출연기관	미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해당없 음
9	성남시	10,000	10,250	3,900,000	1,427	통상임금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민간위 탁 근로자
10	안양시	10,000	10,250	2,801,626	1,313	통상임금	안양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적용	미적용		

연번	지사 채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민간위탁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국도비보조금 대상 근로자 포함)				
11	인천 연수 구	10,000	10,160	4,663,074	183	통상임금	연수구 소속 근로자 (전액구비 기간제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2	화성 시	10,000	10,000	6,818,847	508	통상임금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국·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13	서울 특별 시 양천 구	9,936	10,307	4,797,001, 440원	210명	통상임금	양천구 직접채용 근로자 및 양천구청 시설관리공단	미적용	미적용	국·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14	부산 광역 시	9,894	10,186	45,906,181	1,850	통상임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미적용	미적용	계획 없음	-
15	광주 광역 시 남구	9,843	미정	666,528	28	통상임금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전액구비 직접수행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국·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16	인천 부평 구	9,800	10,090	5,284,792	225	통상임금	1.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미적용	적용	해당 없음	해당없 음

연번	지사 채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17	논산시	9,770	10,050	2019년8월 말 12,102,840	약 500	통상임금	논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계획 없음	
18	용인시	실내9,750 실외10,000	10,290	10,570,906	958	통상임금	용인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한 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	-
19	부산진구	-	9,769	2,103,000	158	기본 시급	부산진구 소속 근로자(전액 구비 지원)	미적용	미적용	적용 범위 확대 등 전반 적인 사항 검토 예정	적용범 위 확대 등 전반적 인 사항 검토 예정
20	천안	9,710	10,050	914,968	804	통상임금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미적용	미적용		위탁기

연 번	지 자 체 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시						소속근로자				관 근로자 확대 검토
21	충청 남도	9,700	10,050	부서별 자체예산 으로 지급	293(201 9. 4 30. 기준)	통상임금	충청남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근로자	일부 적용	미적용	국· 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조례 개정을 통한 적용 대상 확대 검토 중
22	제주 특별 자치 도	9,700	10,000	38,527,019	6,256	통상임금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국· 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중 사회적 경제조 직, 장애인 기업 등 사회취 약기업 및 생활임 금 선제적 도입 민간기 업 인센티 브 제공방 안 검토
23	인천 서구	9,610	9,900	8,965,485	650	2019년 : 기본급 2020년 : 통상임금	서구청,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24	인천	9,600	10,000	27,229,000	1,577	최저임금	시, 공사·공단 및	미적용	미적용		민간부

연번	지자체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문(시 관련 위탁업 무) 확대 적용 검토 중
25	파주시	9,540	9,850	6,827,924	350	통상임금	파주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전액 시비)	미적용	미적용	-	-
26	안산시	9,510	9,830	91,915,239	998	통상임금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근로자	일부사 업 적용	미적용	-	추후 검토 예정
27	인천 남동구	9,490	9,910	1,500,000	477	통상임금	남동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및 하수급인 직접 고용 근로자	적용	미적용		
28	기장군	9,462	9,915	8,417,395	556 (2019.6 월말기 준)	총액기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기장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미적용	미적용		기장군 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 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29	전주시	9,370	미정	8,793,000	650	통상임금	시, 공단, 출연기관	미적용	미적용	-	-

연번	지자체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 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30	인천 계양 구	9,370	10,030	681,980	410	기본급	구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계획 없음	계획없 음
31	김포 시	9,360	10,000	4,125,000	189	기본시급	김포시 및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32	시흥 시	9,350	9,790	11,788,501 (전액시비 사업 대상)	594 (2019. 8. 30.기준)	통상임금	-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시 소속 근로자 -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별도 단가 없을 시 시흥시 생활임 금 적용)	미적용 (별도 적용기 준 있음)	-	-
33	연천 군	9,090	9,780	4,845,000	436	최저임금	연천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검토 중	검토 중
34	안성 시	9,030	9,490	3,672,042	224	시급 (통상임금)	안성시소속근로자,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또는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제외)	미적용	미적용	—	—
35	사상 구	9,020	9,773	9,000	156	통상임금	사상구 소속 근로자 (국, 시비 지원 근로자 제외)	미적용	미적용	미적 용	검토중

연번	지사 채명	생활임금(원)		소요예산 (천원) [2019년]	적용 인원 (명)	임금기준	적용대상 기준	국·도 비 사업 등(외부 재원) 생활임 금 적용 여부	용역· 공사 등 계약 시 생활임 금 적용 여부	향후 계획	
		2019년	2020년							국·도비 사업	기타 사업 확대 여부
36	대전 시 서구	8,960	9,570	3,885,662	499	통상임금	직접 고용 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국·도비 사업 확대 검토 중	
37	남양 주시	8,880	9,510	13,027,000	843	통상임금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	-
38	대전 광역시 대덕 구	8,850	9,130	6,280,359	488	생활임금	대덕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국시비 보조사업 포함)	적용	미적용	기 적용	별도계 획 없음
39	해운 대구		9,820		638	고정수당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	미적용	미적용	미적 용	

지은이

라세림 부대표컨설턴트(와이엘컨설팅)

이현실 대표컨설턴트(와이엘컨설팅)

2019년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인쇄일 2019년 12월 28일

펴낸일 2019년 12월 31일

펴낸이 고현주

지은이 라세림·이현실

펴낸곳 부천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 소 경기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우 14566)

전 화 032-322-3814

편집·제작 주식회사 대유기획인쇄 (02-2675-8528)

ISBN 979-11-956195-***-

<비매품>

